2001년 9월호(제63호)
ISSN 1226-2269 9

9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 기업연금관련 조세제도 정비방향

정책토론리포트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재정 정책과제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그리스의 조세개혁

정책흐름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외

재정통계

주세율의 변천 외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1년 9월호(통권 제63호)
한국조세연구원
• 2001년 9월 15일 발행 • 제63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라7859 •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 전화(02)2186-2130~2 • 월간

월·간
9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이천일년 구월호

C·O·N·T·E·N·T·S

권두칼럼	2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하여 / **禹昌錄**
현안분석	6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 **朴奇白**
	23	기업연금관련 조세제도 정비방향 / **全瑛俊**
명언산책	42	조세정책의 시행착오 - 역사가들려주는이야기
정책토론리포트	44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 · 재정 정책과제 / **朴奇白 외**
OECD 국가의 조세개혁 논의	52	그리스의 조세개혁 / **權五盛**
경제단상	61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 **고희탁**
	64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 **류 인경**
인물탐험	66	서울에도읍한조선개국의풍운아 태조 이성계 / **李 濬**
정책흐름	71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102	재정3법 제 · 개정 추진현황
	106	전자정부 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개시
재정통계	110	주세율의 변천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23	세제개편안 방향은 옳다 외

• 2001년9월 15일발행 • 제 63호 • 1996년5월 31일등록 • 라7859 •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 138-774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79-6 • 전화(XXXXXXXXXX ~2 • 월간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하여

禹 昌 錄 / 법무법인율촌대표변호사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들이 각종 언론매체에 등장한다. 주장의 요지는 대체로봉급생활자의모든소득은유리지갑처럼투명하게노출되어결과적으로세부담이과중하게된다는것이다.

소득에대한세부담이란소득의크기에 (물론각종공제의과정을거치게되겠지만, 이는잠시 접어둔다.) 정해진세율을곱하면되는아주초보적인 단순 계산으로 쉽게 얻어진다. 그저 소득금액에 세율을곱하기만하면세부담이산출되는것이며봉급생활자에게적용되는세율이따로있는것도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주장이상당한설득력을 가지고광범위한공감대를얻고있다. 이는" 사업소득자의소득은정확히포착되지않기때문에사업소득자에 비하여 봉급생활자의세부담이 상대적으로과중하다 "는 주장의 다른 표현으로서 봉급생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대변하고있기때문이리라생각된다.

그동안 과세당국은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고,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와같은주장은점점그설득력을잃어가고있다.

그러나"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배가 아픈 것은참을수없다 "는시쳇말이시사하는것처럼상대적박탈감을해소하는것은그리쉬운일이아니다. 더구나, 오랜세월에걸쳐서 단순한의혹수준을넘어서" 당연히그러하리라 "는확신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 이제는 그렇지 않다 "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란 여간 어려운것이아닐것이다.

봉급생활자들이 모두 나서서 그 유리지갑에서 지출된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과세당국이그자료를사용할수있게한다면사업소득자의소득파악에 크게도움이될것이고, 그렇게 되면사업소득자도부담하여야할세금을모두부담할 터이니상대적박탈감을해소할수있지않을까? 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소득에 차입금을 더한 금액은 소비에저축을합한금액과일치할터이고, 한가계의소비는 결국 누군가의 수익일 터이니 소비자가 소비의 내역을 다 공개한다면 사업자의 수익도 파악되고, 결과적으로소득도모두파악될수있을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이 보이나 우리의 현실 생활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 모두에게 소비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할 수도 없다. 그 누구도 자신의 소비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소비내역은지켜져야할프라이버시에해당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제도를 종합하여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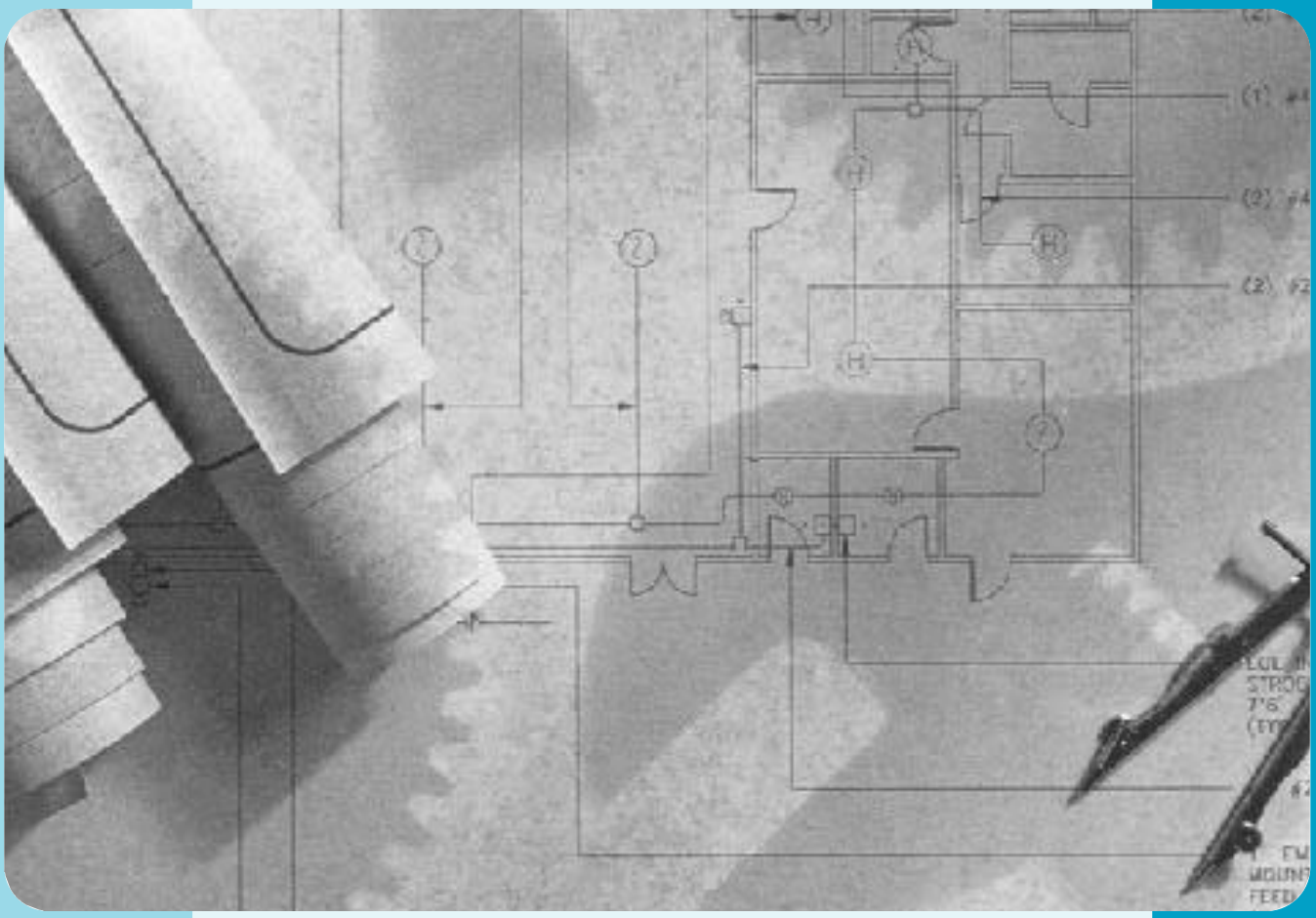
개한 적이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은 바는 없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복권 개념을 가미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있다고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면 문제가 더욱 왜곡될소지도있다. 사업자가신용카드 사용에는원가가 더들어가기때문에현금으로 결제하는경우와같은 값에 팔 수 없다고 한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고집할 소비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거래금액의 몇 퍼센트에 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추가비용임에 틀림없다. 특히 도매상과같이 대규모의 단위 거래를 하는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누리는 혜택보다는 추가비용의 부담이 더 크다고판단할수도있다. 신용카드사용수수료를지급할 현실적인필요성이 없다는 말이다. 스스로 필요하다고느끼지못하는 일을 시키면 당연히 저항이있게 마련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신용카드 사용을 통하여 사업자의소득을파악하려는노력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금년에는‘ 넓은세원, 낮은세율 이라는실로적절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사실종합소득세율을각단계별로10% 내린것은획기적인일이다. 세율을더내려야한다는주장이있지만 어찌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으랴.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사람들로서는 세부담이 4.4%(주민세 포함)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 넓은세원 을정확히포착하기위하여 필요한적절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제가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는 예외가 원칙보다 더 많은 기형적인 제도로 운영되면서 소득파악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말았다. 세제당국이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있지만“ 서민생활에불편을초래한다 는현실론에번번히밀리면서해결책을찾지못하고있다.

이제 우리모두의지혜를 모아서‘ 넓은세원 을정확히포착할수있는제도를모색하여야하겠다. 지금까지의경험에비추어보면강제력이나임기응변적인 유인책은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었다. 모든사람이 공감하면서 스스로 동참하고 싶은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한 점에서 부가가치세제의정상화도심도있게검토하여야할것이다.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서민생활의 불편 도 감수하여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일면으로는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을 지원하면서 일면으로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소비활동이 프라이버시에해당하지만, 자발적으로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한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다. 우선, 봉급생활자의 소비에 대하여 일정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증빙이 제출되는 소비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법을 강구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출의 다른 쪽은 수익이 될 터이니 지출을집계할수있다면그에대응하는수입도집계할수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 봉급생활자에게 세부담을경감하는동시에사업소득자의소득을파악할수도있을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하여는 먼저 봉급생활자부터 이에 적극 협력하여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유리지갑을 가진 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하소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서서, 다소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 넓은 세원 을 정확히 포착하는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1.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朴 奇 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기업연금관련 조세제도 정비방향
全 瑛 俊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朴 寄 白 연구위원(XXXXXXXXXXX)

Ⅰ. 서론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외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업 순소득의 약 35%를 법인세 형태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인세가 기업의 현금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1]. 따라서 기업은 세계시장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세부담이 낮은 국가로 사업의 근거지를 옮기기도 한다. 특히, 정보 · 통신 기술의 발달,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각국의 경제성장에 외국의 투자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외국자본의 유치 및 국내자본의 축적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법인세의인하도그러한노력의하나가되고있다.

최근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탈피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오닐 미국 재무부장관은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인세 폐지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OECD 회원국의 경우를 보아도 법인세율 평균이 1986년 41.6%에서 1999년에는 31.4%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상공회의소는 ‘ 경기회복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경쟁국인 대만 수준

1)“ Tax burdens around world : How do Asia Pacific Companies and Countries Compare?,”*Asia-Pacific Journal of Taxation,* Joe Lu and Charles Swenson, 2000.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최근 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인하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탈피하는한편기업의 경쟁력을강화하려는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2005년까지 23%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건의하였다.

(25%)으로 인하하고, 2005년까지 23%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확대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세수 규모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점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0년의 세수자료를 보면 경기 호조로 국세 세수의 규모가 92.9조원에 달해 전년도의 75.7조원에 비해 22.8%가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세등 주요 세목이 전년도에 비해 10 15% 정도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무려 90.9%가 증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목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2001년 세입예산에서도 법인세의 예상 세수 규모가 약 18.9조원에 달한다.

현재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으며, 재정의 안정성 여부는 지출뿐만 아니라 세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향후에도법인세수의 규모 또는 비중이 유지될지 여부는 법인세뿐

<표 1> 국세 세수 실적

(단위: 조원, %)

	1998		1999		2000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합계	67.8	-3.0	75.7	11.6	92.9	22.8
소득세	17.2	15.6	15.9	-7.8	17.5	10.4
법인세	10.8	14.3	9.4	-13.1	17.9	90.9
부가가치세	15.7	-19.4	20.4	29.7	23.2	14.0
특별소비세	2.2	-27.1	2.7	22.7	3.0	10.0
교통세	6.5	17.3	7.3	11.6	7.4	15.8
관세	3.8	-33.8	4.7	22.2	5.8	23.7
주세	1.8	1.4	2.1	14.5	1.9	-10.3
전화세	0.9	16.9	1.2	29.2	1.5	22.3
교육세	5.2	-3.6	5.3	1.8	5.8	9.5
농어촌특별세	1.0	-2.3	2.0	99.3	1.8	-9.6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만아니라여타 세목의 감세에 있어서도주요 고려사항이될 수밖에 없다.

현재 법인세의 개편방향 논의는 주로 법정세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법정세율이 법인의 세부담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고, 각종 감면과 공제, 특별부가세를 감안한 실효세율이 더적합한 세부담 지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개편방향 논의에 앞서 법인의 세부담 구조와 추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법인세율, 국내 법인의 세부담 변화, 최근 법인세수 증가의 원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인세율 인하 또는 법인의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법인의 세부담을낮추기위한적합한방안을논의해보고자한다.

Ⅱ. 법인세율 및 법인세수

1. 세율

법인의 세부담을 나타내는지표의하나가법정세율이다. 그러나각종 비용공제등 비과세·감면이 존재하여 법정세율은 실제적인 세부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의과세대상이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을 보면 이전에는 상장 여부, 영리·비영리, 공공법인 등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율체계가 복잡하였다. 그러나 법인의 형태에 따른 세율 차별을 없애고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는 법인의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16%, 1억원 이상은 2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농협 등 조합법인은 예외적으로 12%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국세 외에 과세표준의 10%에해당하는지방세, 즉 소득할주민세를부담하여야 한다.

OECD 국가를 보면 1998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법인세율은 헝가리가 19.2%로 가장 낮고 독일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법인세율이 30.8%이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헝가리,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등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국가도많다.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므로 명목세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법인세율을 34.5%에서 30%로 인하하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법인세율이 30.8%이므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법인세율을인하하고있으므로그격차는좁혀지고있다.

<표 2> 법인세율의 변화

	일반법인(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5천만원이하 20% 5천만원이상 30(33)%	5천만원초과 20% 5천만원초과 27%	5%
1988	8천만원이하 20% 8천만원이상 30(33)%	8천만원초과 20% 8천만원초과 27%	3억원이하 10% 3억원이상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이상 34%		3억원이하 17% 3억원이상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2%		3억원이하 18% 3억원이상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0%		1억원이하 18% 1억원이상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1억원이하 16% 1억원이상 25%
1997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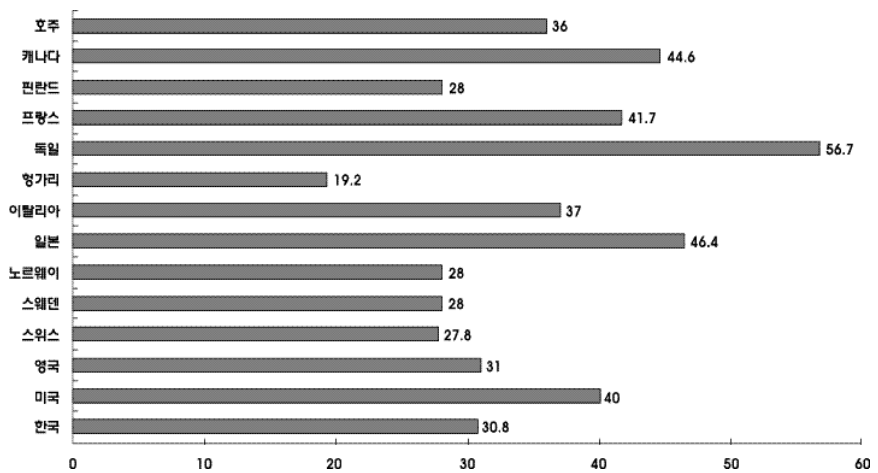
<표 3>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특별부가세
내국법인	영리법인	모든소득	과 세	과 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과 세
	국가 · 지자체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과 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중수익사업소득	비과세	과 세

고, 지방세인 법인사업세의 경우 세율을 11%에서 9.6%로 인하하는 등 중앙·지방정부의 법인세세율을낮추었다. 독일의경우도 2001년부터현행 30~40%인법인세율을 25%로대폭 인하하였다. 프랑스도법인세율을2003년까지 37%에서 33.3%로단계적으로인하하려하고 있다. 캐나다도 법인세율을 2005년까지 28%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이 법인세율을 낮추어도 지방세 및 여타 법인소득 관련 부가세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율만 보면 우리나라법인세율이주요선진국보다는낮지만그격차는좁혀지고있다고할수있다.

[그림 1] 법인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1998년 기준)

(단위: %)



자료: OECD, *Tax Burdens : Alternative Measures*, 2000.

2. 법인세 세수 비중

법인세 징수액 추이를 보면 1975년 약 1천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법인세 세수가 약 17.9조원으로 180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런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 규모가아닌 GDP 대비 법인세비율을 살펴보자. 이에따르면 1970년대 약 1.5%에 불과하던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2%를상회하였고, 특히 2000년에는 GDP에서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방세인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법인과세가 GDP에서 차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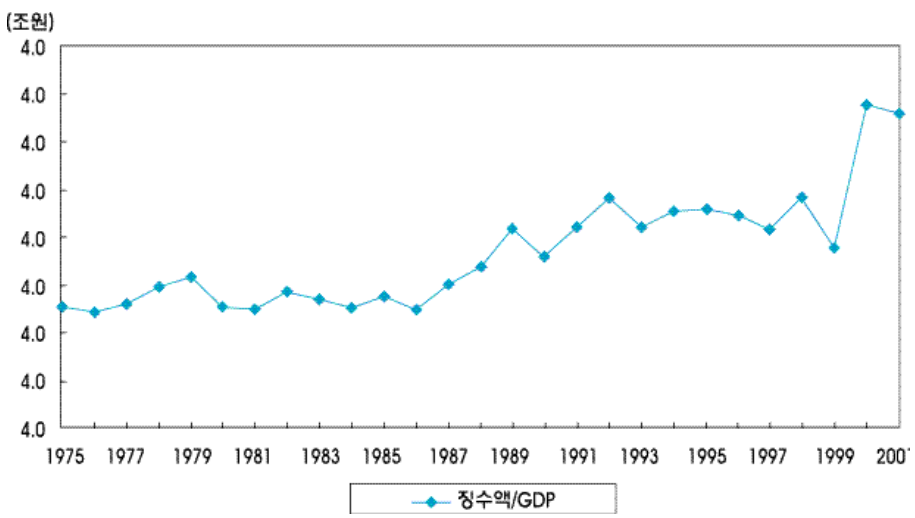
1970년대 약 1.5%에 불과하던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2%를 상회하였고, 특히 2000년에는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방세인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법인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 수준일것으로예측된다.

는 비중은 약3.8%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OECD 회원국을보면 1998년 기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과세의 비중이 한국 2.6%, 미국 2.6%, 일본 3.8%, 독일 1.6%, 영국 4.1% 등이며 평균적으로는 3.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00년도에 대한 외국자료가 없지만 외국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000년의 법인세 증가가 구조적 변화이어서 이후에도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면법인세세수 수준이 외국보다낮은 수준이라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 증가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과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을 살펴보자.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력 및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인건비나 이자비용이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강화되어 향후에도 증가된 법인세 규모가

[그림 2] 법인세 규모와 비중 추이



주: 2001년의경우예산안을기준으로계산한수치임.

유지될 가능성이높다. 반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기업매각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2000년도의법인의납세규모가증가되었다면향후법인세규모가축소될가능성이높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본다[2]. 해당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등 법인과세의 규모가 1998년의 약 6.2조원에서 1999년에는 약 11.9조원으로 증가한것으로나타나전체 법인세수의증가추세와유사하게나타나고 있다.

인건비(급여) 추이를보면 1997년의 약 25.0조원에서 1999년에는 약 24.3조원으로 낮아졌다. 인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이전에는 3%를 상회하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3%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인력 감축으로 수익성이개선된것으로보이며이는 향후에도법인세세수 증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자비용은 1997년 42.6조원에서 1998년 60.2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1999년에는 50.9조원으로 낮아졌다. 이자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당 연도에 각각 4.9%, 6.6%, 5.4%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부채 비율을 보면 1997년의

<표 4> 손익계산서(종합)

(단위: 10억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매출액	450,851	531,722	637,275	729,764	875,156	918,798	942,022
매출원가	378,131	443,054	532,708	618,259	736,898	787,242	791,251
매출총이익	72,719	88,668	104,567	111,505	138,257	131,556	150,771
경상경비	46,187	54,934	64,063	74,796	89,259	92,818	114,361
인건비	14,597	16,832	19,128	22,843	25,029	22,139	24,256
영업이익	26,533	33,734	40,504	36,709	48,998	38,739	36,410
영업외비용	28,676	33,184	39,644	47,649	88,882	109,023	88,698
이자비용	20,752	24,780	29,609	34,187	42,606	60,221	50,944
경상이익	8,860	13,880	17,409	7,189	- 1,862	- 10,767	- 2,650
특별이익	2,818	4,275	3,382	3,328	4,375	10,904	23,84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043	15,012	18,559	8,199	- 2,967	- 19,951	- 3,753
법인세등	3,782	5,158	5,760	4,360	4,287	6,222	11,926
당기순이익	5,261	9,854	12,799	3,839	- 7,254	- 26,173	- 15,679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연도.

2) 표본에는금융및보험업등이제외되어있다.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 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의 인력 감축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을 들 수 있다. 이자율은증가 요인으로작용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이자비용 축소로인한 수익성개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99년의 경기호황도 일시적 증가 요인으로작용하였다.

<표 5> 인건비 및 이자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중(종합)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매출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출원가	83.9	83.3	83.6	84.7	84.2	85.7	84.0
매출총이익	16.1	16.7	16.4	15.3	15.8	14.3	16.0
경상경비	10.2	10.3	10.1	10.2	10.2	10.1	12.1
인건비	3.2	3.2	3.0	3.1	2.9	2.4	2.6
영업이익	5.9	6.3	6.4	5.0	5.6	4.2	3.9
영업외비용	6.4	6.2	6.2	6.5	10.2	11.9	9.4
이자비용	4.6	4.7	4.6	4.7	4.9	6.6	5.4
경상이익	2.0	2.6	2.7	1.0	- 0.2	- 1.2	- 0.3
특별이익	0.6	0.8	0.5	0.5	0.5	1.2	2.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0	2.8	2.9	1.1	- 0.3	- 2.2	- 0.4
법인세등	0.8	1.0	0.9	0.6	0.5	0.7	1.3
당기순이익	1.2	1.9	2.0	0.5	- 0.8	- 2.8	- 1.7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연도.

<표 6>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추이

(단위: %, 조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부채비율	312.9	308.1	305.6	335.6	424.0	336.1	235.1
부채규모	328.8	401.5	463.6	549.5	735.6	731.0	725.3
차입금이자율	11.2	11.53	11.95	11.34	10.36	12.72	10.76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연도.

424.0%에서 1999년의 235.1%로 크게 낮아졌지만 부채 규모는 1997년의 735.6조원에서 1999년의 725.3조원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차입금 평균 이자율도 1998년을 제외하면

11% 전후 수준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자율의 하락과 부채의 감소로 이자비용이 줄어들어 법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자율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이자비용축소로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업 매각 등 일시적 요인과 관계가 깊은 법인의 특별이익을 살펴보자.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이전까지 특별이익은 3 4조원 수준이었으나 1998년에는 10.9조원, 1999년에는 23.8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별이익 증가가 어느 정도 법인세수에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 매각과 관련이 높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세수자료를 살펴보자.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은 1998년 6,860억원, 1999년 6,491억원, 2000년 6,16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매각 등 일시적 요인으로 법인세 세수가 증가한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이익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데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이 일정한 역할을하였을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변동적 요인인 각 사업연도소득과 결손을 보면 소득은 2000년도에 85.8조원으로 이전의 소득에 비해 현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결손도 1999년도에 94.1조원으로 뚜렷한 증가를 보였지만 2000년에는 64.1조원으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기업경영분석의 경우 1998년과 1999년의 법인세 차감전 수익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법인세 자료는 2000년도(기업경영분석의 1999년도에 해당)에 소득이 결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의 경우 표본자료에 결손기업이 다소 많이 포함되고 있거나 결산시점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 알수가 없다.

법인세 세수자료에따르면 2000년도의 세수증가는 1999년도의 경기호황에힘입은바가 크

<표 7> 사업연도별 소득과 결손(법인세 신고자료)

(단위: 조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사업연도소득	20.0	21.1	25.0	31.3	33.3	33.0	38.8	85.8
사업연도결손	7.9	8.4	8.7	12.6	15.7	38.6	94.1	64.1

자료: 「국세통계연보」, 법인세세표

최근의 법인세수 증가는 일시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으므로 GDP 대비 법인의 조세부담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높아지겠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는 2000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전망된다.

다는 것을 유추할수 있다. 또한 결손의 증가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999년도 수준의 성장이 향후에는 어렵고, 구조조정이 어느정도진행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향후법인의소득과결손규모가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법인세수 증가는 일시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DP 대비 법인의 조세부담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높아지겠지만 2000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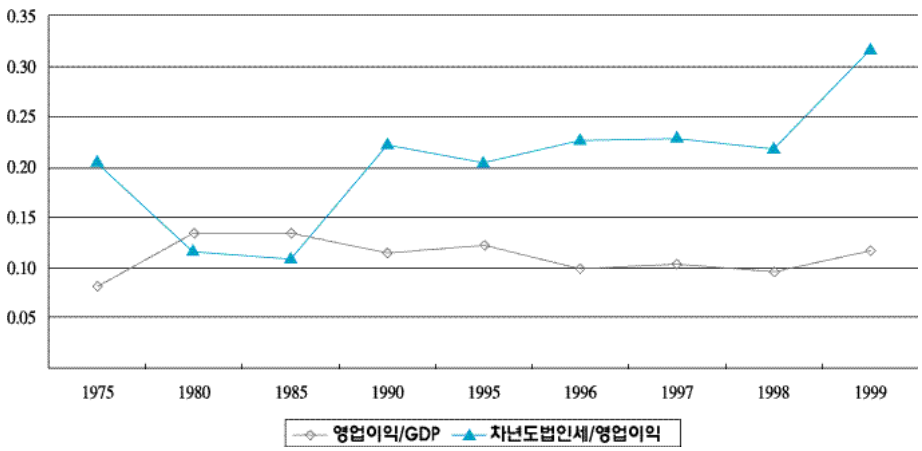
III. 법인세 세부담 추이

1. 영업잉여 기준 실효세율

앞에서 살펴본 GDP 대비 법인의 조세부담 비율은 (조세부담액 / 법인소득)×(법인소득 / GDP)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실효세율×GDP 대비 법인소득 비중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은 실효세율이 동일하여도 법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법인의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한 법인소득 대비 조세부담, 즉 평균유효세율 또는 실효세율을 산출해보자. 실효세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법인의 경제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에 있는 법인의 영업잉여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실효세율 추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조세부담액도 원천징수, 중간납부, 정산 등의 관련 연도가 달라 법인세 징수액이 사업연도의 소득(영업잉여)과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징수액과 소득과의 편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조세부담액의 변수로 법인세 징수액을 사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년도의 법인세, 예를 들어 2000년도 법인세는 1999년도 영업잉여와 비교하여 실효세율을 구하였다.

[그림 3] 실효세율(영업잉여 기준)과 GDP 대비 법인소득 비중



주: 지방세자료가불분명하여법인세자료만을사용
법인세징수의주대상이전년도영업실적이므로평균유효세율을구하는데있어서차년도법인세를사용

계산결과를 보면 1980년 전후에는 실효세율이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그 비율이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22~23%로 높아졌고, 1999년에는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의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하는 경우 영업잉여가 소득과 결손을 합산한 것이므로 결손이 많은 연도의 경우에는 영업잉여의 규모가줄게되어실효법인세율이 높아지는문제가 발생한다. 1999년도가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대표적인 연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의 영업잉여를 사용하여 계산한 자료를 보면 EU 국가의 경우 평균세율이 26.3%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효평균세율이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25%를 상회하고 있으며, 계산에서 제외된 지방세를 포함하면 25%를 상회할 것이므로 EU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위기 이후 결손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부담을 비교하는것은 적절하지않다.

2. 과세자료 기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업잉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익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아닌 전체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은 1994년 25.5% 이후 점차 낮아져 2000년도에는 16.9%로 나타났는데 2000년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급증하여 과세표준이 낮아짐으로써 평균유효세율이급격히증가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으므로정확한실효세율이라고하기어렵다.

<표 8> 기업의 세부담 국제비교(지방세 포함)

(단위: %)

	명목세율	평균세율(기업)	평균세율(영업잉여)	GDP 대비비율
EU 평균	36.5	26.9	26.3	2.9
스웨덴	28.0	27.5	28.2	3.0
스페인	35.0	24.1	20.5	1.9
이탈리아	37.0	35.3	51.4	3.6
아일랜드	38.0	13.9	n. a.	2.9
프랑스	36.7	32.8	21.0	1.6
벨기에	40.2	21.0	29.5	3.0
오스트리아	34.0	17.7	7.6	1.6
네덜란드	35.0	31.8	22.2	3.3
영국	33.0	29.0	40.6	3.3
독일	56.7	38.5	17.6	1.1

주: 평균세율(기업)은 개별 기업자료를바탕으로 평균세율을계산한 자료이며, 평균세율(영업잉여)은영업잉여자료를바탕으로계산한자료임.
자료: OECD, *Tax Burdens : Alternative Measures,* 2000.

기업의 평균적인 세부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소득이 발생한 기업의 세부담을 파악하는 것이 더정확한세부담지표가된다.

상장기업의 세전소득과 총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먼저 살펴보자. 해당 자료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있는 법인세 차감전 소득과 법인세 등의 항목을 사용하여 기업별로 실효세율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만 경기변동적 요소를 감안하여 1995 1998년까지의 3년간 소득과 세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상장기업 실효세율의 중간값을 대표치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기업의 소득 대비 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캐나다와 영국은 우리보다 1%p 높고, 싱가포르와태국은 우리보다 1%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 대만, 중국, 홍콩, 멕시코등은 법인세 세부담이 우

<표 9> 법인세 최고세율과 유효세율의 비교

(단위: %)

	법인세최고세율	유효세율
캐나다	0.38	0.30
미국	0.35	0.37
일본	0.50	0.50
영국	0.31	0.30
아일랜드	0.28	0.20
한국	0.28	0.29
대만	0.25	0.12
멕시코	0.35	0.22
홍콩	0.16	0.13
중국	0.33	0.24
말레이시아	0.28	0.29
싱가포르	0.26	0.28
태국	0.30	0.28

주: 소득이발생한상장기업의실효세율의중간값을취한것.
실효법인세율에는지방세등법인이부담하는모든세금이포함되며, 이전3년간의세율을고려함.
자료: Joe Lu and Charles Swenson,“ Tax burdens around world : How do Asia Pacific Companies and Countries Compare?, ”*Asia-Pacific Journal of Taxation,* 2000.

리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28%에 추가하여 특별부가세나 지방세, 외국납부세액 등 여타 세금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실효세율 29%는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계산연도인 1997, 1998년도가 외환위기 기간이라 법인의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중간납부 등 법인세 부담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법인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인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본다.

계산 결과를 보면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은 1994년 25.5% 이후 점차 낮아져 2000년도에는 16.9%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급증하여 과세표준이 낮아짐으로써 평균유효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효세율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1999년도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5.5조원 수준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이월결손금이 21.8조원으로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하여 보면 1994년 28.5%를 정점으로 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23.6%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므로 평균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의 세부담이 최근감소하였다고할수있다.

<표 10> 총소득과 세액의 추이 및 비율(법인세 신고 기준)

(단위: 10억원, %)

	각사업연도소득①	과세표준②	세액③	비율1(③/①)	비율2(③/②)
1991	17,259	14,445	3,397	19.7	23.5
1992	20,007	17,851	5,049	25.2	28.3
1993	21,095	18,441	5,245	24.9	28.4
1994	24,999	22,352	6,376	25.5	28.5
1995	31,338	28,056	7,603	24.3	27.1
1996	33,041	30,065	7,524	22.8	25.0
1997	33,317	29,888	7,101	21.3	23.8
1998	32,969	29,529	6,981	21.2	23.6
1999	38,777	32,659	7,693	19.8	23.6
2000	85,781	61,585	14,538	16.9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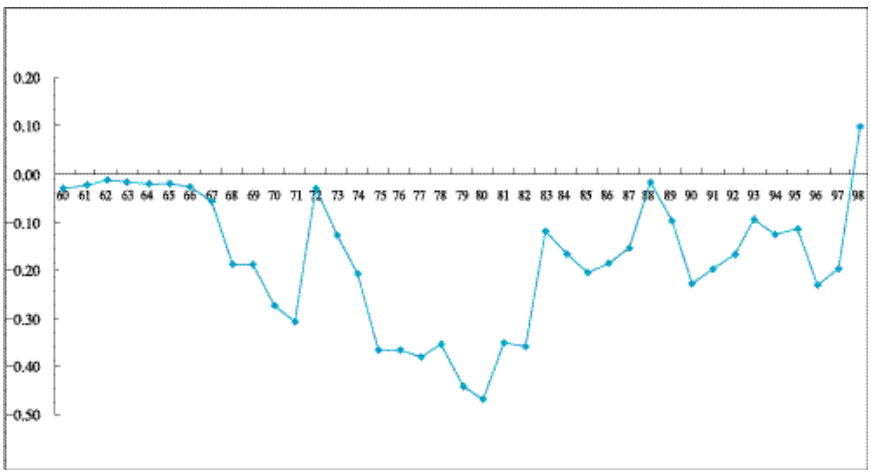
주: 비율1은사업연도소득대비세부담이고, 비율2는과세표준대비세부담임.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법인세표참조.

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하여 보면 1994년 28.5%를 정점으로 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23.6%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평균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의 세부담이 최근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한계세율 기준

법인의 세부담은 추가적인 1단위 투자에 대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평균유효세율이 기존 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라면 세전 및 세후 수익의 격차를 나타내는 유효한계세율은 미래 투자에 대한 법인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현진권(2001)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법인의 유효한계세율은 대부분 음수로 나타났

[그림 4] 법인의 유효한계세율



자료: 현진권,「한계유효세율을통해본우리나라세부담추이」,『재정포럼』, 2001년5월호, 한국조세연구원.

고, 외환위기 이후에 양수로 나타났다[3]. 특히 1970 80년대에 유효한계세율이 낮았으며, 최근 우리나라 법인의 유효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차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정책의 변화에 의한 유효한계세율의 변화라기보다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의결과로나타난현상이다.

IV. 시사점

법인의 세부담은 다양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계속 낮추어 왔고, 외국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지만 지방세 등 여타 법인소득 관련 세금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세부담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998년 2.6%를 기준으로 하면 외국보다 낮고, 가장 최근 연도인 2000년 3.5%를 기준으로 하면 외국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00년도의 세수 증가는 일시적인 요인도 많이 있으므로 향후에

3) 현진권,「한계유효세율을통해본우리나라세부담추이」,『재정포럼』, 2001년5월호, 한국조세연구원.

세부담 분석결과 평균유효세율은 낮아지고 한계세율은 높아지므로 법인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미래 투자에 대한 세부담은 높이고, 기존 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적정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법인의 세부담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율보다는 특별부가세를축소·폐지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는 1998년보다는 높고 200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인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한대규모감세는어렵다는 것을시사한다.

평균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영업잉여 자료를 사용한 경우 1999년도에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EU 국가의 평균유효세율 평균인 26.3%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경제위기 이후 결손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한 경우를 보면 수익이 있는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 2000년도에는 16.9%가 되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면 23.6%가 되었다. 반면 한계세율을 보면 최근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으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평균유효세율은 낮아지고 한계세율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법인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미래 투자에 대한 세부담은 높이고, 기존 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적정한 방안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한편 여타 공제 및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에서의 세제개편 배경과 내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것으로보인다.

향후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법인세율 인하가 논의되고 있지만 법인의 세부담은 법인세율 외에 공제 및 감면, 비과세, 특별부가세, 결손금이월 및 소급, 최저한세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법인세부담의 완화 방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 세제의 간소화, 행정적 부담, 비과세 및 감면 축소여부, 경제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화되어 불가피하게 법인의 세부담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율보다는 특별부가세를 축소·폐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경우 세율 1%p 인하는 대략 과세표준 × 0.01의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세표준이 약 61.6조원이므로 세율 1%p 인하가 약 6천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p 정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약 2조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법인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벌충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반면 특별부가세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세제의 단순화, 행정부담의 감소, 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거의 사라진 점, 세수 감소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점 등에서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작은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존재하고, 최저한세율이 높아 각종 세제적 유인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낮추어 주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손실의 이월공제기간 확대는 행정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연금관련 조세제도 정비방향



全 瑛 俊 연구위원(XXXXXXXXX)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수단은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인연금)으로구성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도입되어 그 역사가 일천한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훨씬이전인 1960년부터도입되어현재는제도가정착되어있다고할수있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취약하던우리나라에서근로자의중간퇴직시재취업까지의실업보험의기능과정년퇴직시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복합적인기능을담당해왔다고할수있다. 개인연금은1994년 도입된 이래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공 · 사연금의 역할분담차원에서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연금이 여타 저축수단과 다른점은 여타 저축수단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친 민간저축수단이며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장기적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지원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 노후소득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의 사외적립이 보편화되지 않아 퇴직금 급여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이 정책과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제로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노후소득보장수단에대한개편이불가피할것이며, 현시점에서는이와관련된현행의제도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 그러므로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조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현행의 관련조세제도의 검토와개편방향설정시고려하여야할사항에는향후의 공·사연금의역할분담, 각종연금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부담의 적정수준 그리고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대체를 위한 방안 등이있으며, 이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향후 도입될 기업연금에 대한 조세제도에 국한하고자 한다. 이는 노령화에 대비한 연금과세개편이 2000년 세제개편에 의해 상당부분 정비되었으나, 기업연금이 사실상 도입되지 않아 기업연금 과세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의 적격요건 등은 향후 기업연금의 도입과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대체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본 자료에서는 현행 연금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업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조세지원수단 그리고조세지원의 적격요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절에서는 현행의 연금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기업연금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미비점을 규명하고, III절과 IV절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기업연금 과세체계, 세제지원방법 그리고 세제지원의 적격요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 본자료의논의를마무리하고자 한다.

II. 현행의 연금과세제도

기업연금에 대한 조세제도를 논의함에 있어 공적연금,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 여타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조세제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연금에 대한 과세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체계를 살펴보고 기업연금과세와관련된현행제도의문제점에대해간략하게언급하고자 한다.

현행의 연금과세체계는<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보험료 불입단계, 연금기금 증식단계, 급여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체계는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급여시 과세하는 체계(Exempt Exempt Taxed, EET)로서이는 2000년 세법개정에 의해 확립되었는데, 제도개편 이전의 과세체계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연금급여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체계(Taxed Exempted Exempt, TEE)였다. 현행제도하에서는공적연금기여금은근로자및사업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체계는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급여시 과세하는체계로서이는 2000년세법개정에의해확립되었다.

<표 1> 연금과세제도

연금제도	연금보험료불입시	적립기금이자수익	급여시
국민연금 - 고용주 - 근로자 - 자영업자	 손금산입 100% 소득공제 100%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세과세
특수직역연금 - 고용주 - 근로자	 손금산입 100%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세과세
퇴직금	40%에대해손금산입[1] 보험회사에적립시 100% 손금산입	해당사항없음 비과세	소득세가과세되나 유효세율이낮음; 금액에따라세부담상이
개인연금	보험료불입액에대해 소득공제[2] 허용 (연간 240만원한도)	비과세	소득세과세

주: 1) 여기서 40%라함은당해전종업원이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급여추계액의 40%를의미함. 만일이금액이종업원총급여액의 10%를초과할경우손금산입의한도금액은후자금액이됨.
2) 55세부터연금급여가능하며 10년이상가입을의무화하고있음.

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고, 개인연금기여금은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되게 되었다. 다만, 소득공제허용에따른급격한 세수 감소를우려하여 2001년에는 불입금의 50%만공제하고 2002년부터전액공제하게하였다.

공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안으로 과세대상의 기존 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하며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공적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는 반면, 장해연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액 중 기소득공제받은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2001년 이전에 가입된 개인연금과 2000년 1월 1일 이후 가입된 신설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과세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00년 세법개정 사항은 신설 개인연금저축에 적용되며, 2001년 1월 1일 이전 가입 기존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금불입액의 40%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비과세하는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설 개인연금가입자가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20%세율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약한 경우 그 동안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연 240만원 한도)에대하여5%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이 형태의 소득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아울러 해당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를허용되고 있다[1].

250만원이하: 전액
250만원 500만원 : 40%
500만원 900만원 : 20%
900만원 2600만원 : 10%

→ 근로소득공제의50% 수준 (최대 공제액은 600만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연간 연금 총수령액(개인연금 포함)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타 연금소득이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하며, 연금소득만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된다. 퇴직연금 · 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10%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게 한다.

퇴직금과 관련된 조세제도는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과 같이 퇴직금 준비금 적립단계와 퇴직급여 지급단계의 제도로 요약될 수 있다. 퇴직금 준비금 충당의무는 고용주에 귀속되므로, 퇴직금 준비금 적립에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용주의 퇴직급여 준비금 적립은 사내적립과 사외적립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용주에 의

1) 연금소득공제액은연금수령인구, 연금소득수준, 생계비상승률등을감안하여필요시마다적의조정하기로한다.

기업연금 도입시 부각될 현행의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기업연금 보험료 불입에 대한 가입자의 소득공제 및 고용주의 손금산입한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목표를 감안하여기업연금보험료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격성 및 소득공제및 손금산입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한 사내적립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한도는 다음 두 가지(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①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② 충당금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 사외적립의 경우는 주로 종업원퇴직보험이나 퇴직보험의 형태로 보험회사에 적립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 보험료불입액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다. 이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사내적립시 실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계정상에만 존재하는 사내적립도 지불보장이 되는 사외적립과동일하게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세제상 근로자는 급부단계에서만 관련되며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고 있다.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단체보험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금의 종류에 따라 차등 공제되는데 퇴직급여와 단체퇴직보험금은 50%가 수령액에서 공제된다. 이와 아울러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차등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산출세액 산정과정에서 연분연승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퇴직소득이 장기형성소득이고 소득세제 세율구조가 누진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장기형성소득의 실현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실질세부담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결정세액은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공제한도 = 근속연수×24만원)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의 이중적인 세제지원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실효세율은 매우 낮은실정이다.

기업연금 도입시 부각될 현행의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기업연금 보험료 불입에 대한 가입자의 소득공제 및 고용주의 손금산입한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의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체계는 기업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만 기업연금보험료 불입단계에 대한 과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기업연금보험료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격성 및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업연금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퇴직금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급보장성의 문제와 지급형태의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을 이와 대체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기업연금제도하에서는각 기업들은 외부 금융기관에 기업연금급여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강구하는 한편,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하에서 퇴직금제도와 의무적용규정에 대한 개편이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순조로운 대체를 위해서는 기업측면에서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함으로써발생하는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이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현재 퇴직금에 부여되

[그림 1] 퇴직급여 과세제도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 퇴직급여액의 50%[1] / ○ 근속연수별공제액 • 5년이하: 1년당 30만원 • 5 10년 : 150만원+(근속연수−5년)×50만원 • 10 20년 : 400만원+(근속연수−10년)×80만원 • 20년초과 : 1,200만원+(근속연수−20년)×12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2]: 산출세액의 50% * 공제한도: 근속연수×24만원] = 퇴직소득 결정세액

주: 1) 2000년세법개정이전에는명예퇴직수당에대해75% 허용
2) 2005년까지퇴직소득세액공제폐지

기업연금과세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른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이고다음으로기업연금도입에따른연금관련세부담의적정수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그리고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유도하기위하여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반면 기업연금제도하에서도지급보장성강화및지급형태의연금화에대한조치가필요하다.

고있는조세지원의수준을하향조정하여기업연금으로의이행을유도하여야할것이다.

III. 기업연금과세체계 구상

1. 고려사항

기업연금과세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른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일 것이다. 200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체계가 TEE형에서 EET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연금 도입시 과세체계도 현행 체계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ET형 과세체계는 주요 외국의 연금과세체계가 일반적으로 EET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TEE형보다 효율적인 과세체계로알려져있다. EET체계는조세부담이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부과되지 않고 은퇴 후 노년기의 소비시점에서 부과됨으로써, 연금과세가 비교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의 왜곡효과가 적은 소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후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관련 정부예산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적정한 정부재정부담을 함으로써 세부담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세대간 재정부담의 공평성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세법체계에는 기업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연금보험료 불입시 고용주의 손금산입 한도, 가입자의 소득공제 한도 및 관련규정이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연금 도입에 따른 연금관련 세부담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연금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한도를 높게 규정할 경우, 기업연금이 세부담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단계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개인단계에서 과세이연이 허용되고 연금급부시 과세되더라도 실효세 부담률이 매우 낮을 것이므로 (노령기의 여타 소득수준 하락, 연금소득공제 허용으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의 기업연금을 이용한 세부담 회피를 부추길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의 임금대체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일가능성이 있어, 조기 은퇴, 세수 감소등의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 기업연금제도를제공할수 있는기업은 주로 고용의안정성이 높은 기업으로서기업연금혜택을받을 수 있는근로자는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속하므로, 기업연금제도에대한과소한 조세지원은세부담형평성면에서도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 및소득공제 허용폭은 노후소득보장수단의 적정 소득대체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노후소득보장수단의3층구조(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세제상조화가필요하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연금보험료 불입단계, 기금 적립단계, 연금급여 급부단계에서 발생하므로 각 단계별 제도를 디자인함에 있어 이중과세 발생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기금 적립단계에서는 비과세,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시에는 기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에 기초한 연금급여에 대해서만과세하여야 할것이다.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반면 기업연금제도하에서도 지급보장성 강화 및 지급형태의 연금화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지급보장성 강화가 특히,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 설정시 중요한 사항이며, 기존 퇴직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기업연금급여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될 경우,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재투자되거나 저축하기보다는 퇴직 당시의 가계수요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과세체계

위에서 언급한 제반 고려사항을 감안하건대, 기업연금의 과세체계는 현행의 연금과세체계와 같이 EET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도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고용주의 손금산입과 가입자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며, 연금급부 단계에서는 기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에 근거한 연금급여에 대해 여타 연금소득과 여타 종류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연금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를허용하는 현행체계를그대로적용할수 있을 것이다.

3. 납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기업연금과세제도 개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납부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손금산

보험료 납부단계에서 지나치게 폭넓은조세지원이 이루어질경우세부담 회피의 문제와조세지원 귀착의불공평문제가야기될수있다.

입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연금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은 보험료 납부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에서 지나치게 폭넓은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세부담 회피의 문제와 조세지원 귀착의 불공평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원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조세지원대상 연금제도에 대한 엄격한 적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2].

현 상황에서의 개편방향은, 기업연금 보험료 불입시 총 급여의 일정률을 한도로 고용주에 의한 손금산입 및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일 것이다. 손금산입과 소득공제 한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① 기존의 퇴직금의 임금대체율(연 8.3%) ② 여타 노후소득보장수단, 특히,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③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노후소득보장수단(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전체의 임금대체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가치판단, 그리고 ④ 공·사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퇴직금의 임금대체율수준이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연금이 퇴직금의 대체수단이라면, 퇴직금의 임금대체율이 고용주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업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고용주의 기여수준이기 때문이다[3].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노후소득보장수단의 적정 임금대체율을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업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한도 설정과 더불어, 기업연금의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에 허용되는 갹출금 소득공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저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각종 사적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적이고 유동성 제약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아 보험료 갹출시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이 조치에 대한 혜택이 이들 계층, 즉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

2) 조세지원적격요건은Ⅳ절에서언급하기로한다.
3) 퇴직금제도의운용은대부분의기업의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충분히적립하지않고필요시기업의운용자금에서충당하여 지급하고있다. 따라서, 퇴직금의운용방식은기본적으로부가방식에가까우며, 고용주의기여율은퇴직금의소득대체율과가깝다고해석할수있다.

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보험료 납입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적연금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손금산입 혹은 소득공제하고 다음으로 기업연금, 개인연금 순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공적연금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가 허용되어야 하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노사 합의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 보험료 납입금액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연금에 우선하여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개인연금은 기업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개인연금의 저축증대효과가 극히 미미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기업연금의 도입(퇴직금을 대체할 경우)[4], 민간저축의 증가를 통해 후생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5], 개인연금 납입보험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6]. 세제혜택의 포괄적 한도 설정의 또 다른 이유는 향후 공·사연금 개선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임금대체율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국민연금 소득비례분에 대한 적용 제외가 허용되고 특정 기업이 이를 채택한 경우 기업연금 보험료 불입에 대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한도를 포괄적 세제지원 한도 내에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제혜택이 고소득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의 기준 소득에 대한 상한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이익분배형, 주식상여형 기업연금 등)에서는 출연 한도 및 손금산입 한도 계산시 고려되는 봉급의 한도를 최초 16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기업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책 강구시 이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관련제도의 개편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금 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적립시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전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의 40%로 규정되어 있고, 이 한도 내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사내적립하고 이를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손금산입이 허용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외적립을

4) Chun(2000) 참조.
5) 전영준(2000)은부가방식으로운영되던퇴직금이급여준비금의사외적립을의무화하는기업연금으로대체될경우준비금의 사외적립으로인해민간저축이상승하고그결과미래세대의후생수준이전반적으로상승하게될것으로평가하였다.
6) 개인연금의 출처가 각근로자의소득이아니라타인으로부터의증여에 의한것일수도 있다. 김원식(2001)은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일정연령이하에대해서는근로소득에대해서만개인연금불입이이루어져야하고, 근로소득이없는자는세제혜택을 받지못하도록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기업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한도 설정과 더불어, 기업연금의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에 허용되는 갹출금 소득공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제혜택이 고소득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귀착되는 것을방지하기위하여손금산입및소득공제의기준소득에대한상한을둘필요가있다.

의무화하는 기업연금보다는 퇴직금제도를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위해서는 기업연금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노동고용비용 증가압력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연금 도입 초기에는 퇴직자에게 기존에 축적된 퇴직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미래의 기업연금 지급에 대비하여 기금을 축적하여야하는 이중의 부담이 고용주에게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도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높게 유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 도입 시기에 맞추어 일정 기업이 기업연금을 채택할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적용 제외시켜주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연금보험료부담을경감시키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조세지원의 형평성 부여를 위해서이다. 자영업자에게는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업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개인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고 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이에 허용된 소득공제는 별도 개인연금 가입시 보험료 불입에 대한소득공제 한도적용시제외하여야 할것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기업연금제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규정의 설정과 관리상 상당한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규모기업에는 기업연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리상 단순화를 도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기업에 대한 유사기업연금제도의 허용이 필요하다. 예들 들어, 미국에서는 Simplified Employee Pension(SEP)과같이 기업연금의 설립 대신, IRA 계정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바로 출연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 과세제도는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여타 기업연금과 동일하게 설정하며, 이 제도와는 별도로 개인연금에가입할수 있게 한다.

4. 연금수급시 소득세 과세

기업연금급여 수급시 과세는 지급기관이 10%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준용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대상기업연금급여를현행의개인연금에대한과세제도와같이기소득공제받은연금보험료 불입액과 그 이자분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연금급여를 연금형태로 받을경우는현행의제도를그대로적용하고, 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지급시는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기업연금이 퇴직소득을 대체한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금(혹은 퇴직연금)과 별도의 기업연금이 제공된 경우는 일시금의일정률만과세소득에포함시키며, 이비율을기업연금가입연수에따라차등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영국의 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에 적용되는 taper relief와유사하다. 영국의taper relief제도는유가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표에 산입하는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장기 양도차익에 대한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일시금의 일정률만과세소득에포함시키는제도는 종합과세되는연금소득에대해연분연승법을적용시키기 위해 감수하여야 하는 세제의 복잡성을 방지하고 장기형성소득의 과세시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아울러 방지할 수 있다. 급여형태를 일시금보다 연금형태(annuity)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세산입비율설정시세부담이연금형태선택시낮게유지되게조정되어야할것이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가 노후소득보장수단의 확충에 있으므로 조기인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제외한 기업연금 조기인출시(55세 이전의 인출시), 인출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하고, 인출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20%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7]. 벌과금 부과의 예외 사항으로는 ① 근로자의 정년 퇴직시 또는 55세 이후, 혹은 ② 근로자가 이직시에는 전환연금으로 계약 이전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다른 세제지원적격 기업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③ 사망 및 장애발생 ④ 심각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출 ⑤ 기업의 도산시 ⑥ 해외이주 등이 고려될 수 있다[8]. 벌과금 부과 이유는 기업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보존하고 기업연금에 부여된 세제지원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의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하에서는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과세한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약한 경우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5%

7) 개인연금의중도해지시와동일한방법으로과세

8) ①의 경우 연금소득으로정상과세하고, ②의경우과세를위해이전(rollover)관련과세제도가갖추어져야할 것이며, ③, ④, ⑤, ⑥의경우인출금에대해기타소득으로과세할수있을것이다.

기업연금급여 수급시 과세는 지급기관이 10%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선택을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준용할수 있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가 노후소득보장수단의 확충에 있으므로 조기인출을 방지하는 조치가필요하며이전시과세제도가갖추어져야할것이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인연금과세체계를 그대로 기업연금에 적용할 경우 제재수단으로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5년 이내 해약시 부과되는 5% 가산세의 금액이 매우 낮을 수 있고, 중도해지금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시 중도해지금에 대해 75%(혹은 80%)의 필요경비 공제가 허용될 경우 세부담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이직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이전(rollover)시 과세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근로자가 적격 기업연금으로부터 (일시금 형태로) 분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예: 6개월) 내에 다른 적격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이전(rollover) 또는 이체(transfer)시키는 경우 이전 또는 이체된 분배금은 당해연도에 과세되지 않고 과세이연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이연 기간을 지나치게 연장하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9]. 분배받은 금액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하고, 장기형성소득 과세시 결집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적용을 배제하여 분할 이전을 이용한세부담 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퇴직저축지원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이전할 경우에 새로 옮기는 직장에서 관련 기업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 근로자의 정년퇴직시까지 혹은 55세 이후까지 적립할 수 있는전환연금[10]이 허용되어야할 것이다[11].

IV. 세제지원 적격요건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제혜택 부여 요건 설정은 기업연금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

9) 미국의경우, 세제지원적격요건의하나인배분(distribution) 요건에가입자가연금급여개시일을아무리늦춘다하더라도가입자의연령이 일정연령(70.5세)에도달하는해의 다음 연도4월 1일이내에는퇴직연금의일정부분(최소배분액) 이상을 배분하여야하며, 이를위반시최소배분액에미달하는금액의 50%의범칙금이부과된다.

10) 미국의Conduit IRA 제도에해당하는제도.

11) 이제도하에서근로자는전환연금을취급하는금융기관간에계약이전을할수있어야하며, 전환연금은이전된금액이외에추가적으로갹출하는것이금지되어야하며, 개인연금으로인정되지만기존개인연금의세제혜택및한도와무관하게취급되어야한다.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참여자격 요건, 적용범위 요건, 갹출 및 급부에 있어서의 무차별 요건, 배분요건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의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열사 부당지원 제한 및 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각 사항에 해당되는적격요건을 아래와 같이예시하고자 한다.

1. 참여자격(eligibility)

기업연금에의 가입자격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1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근속연수 1년 이상 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참가자격이 부여되어야 할것이다.

2. 적용범위 요건

기업연금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특정 부류의 근로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되도록 적격요건을 갖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협의회 대표와 약정한 제도로서 적격 요건을 갖는 전 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고급여 종업원에 비하여 일반 종업원에 대한 적용범위가 충분히넓게 규정되어야한다는것이명시되어있다.

<참고> 미국의퇴직연금의 세제지원 적격요건: ①+③혹은②+③

① 모든非고급여 종업원의 70% 이상에대해급부를제공해야 한다(percent test).

② 당해 제도에 의거 급부를 수령하는 고급여 종업원 비율의 70% 이상에해당하는 非고급여 종업원의 비율에 대해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ratio test).

③ 非고급여 종업원의 평균급여율이 최소한 고급여 종업원의 70% 이상 되어야 한다(average benefits test).

3. 무차별 조건

무차별 조건의 취지는 갹출 및 급부에 있어 고급여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내에 차등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세제혜택 부여 요건설정은 기업연금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참여자격 요건, 적용범위 요건, 갹출 및 급부에 있어서의 무차별 요건, 배분 요건 등이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세법에서는 두 경우 무차별조건을 통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모든 종업원의 갹출 또는 급부를 동일한 비율(예: 보수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는 경우 ② 실제 출연비율 검사(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test, ACP test)[12] (확정갹출형의 경우)를 통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수급권 부여조건

수급권 부여조건의 취지는 해고 또는 전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출연한 부분을 상실하는 것으로부터적절한 기간 동안근무한종업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의퇴직금의 수급권과 동일하게 사용자의갹출즉시 수급권이 발생하도록규정할수 있을것이다. 미국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 출연에 인하는 종업원 발생 급부의 100%를 수령하거나, 혹은 수급권을 아래와 같이3 7년에걸쳐 단계적으로부여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근속연수	3	4	5	6	7년이상
권리부여비율(%)	20	40	60	80	100

5. 배분요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가 노후소득보장수단의 확충에 있으므로 ① 근로자의 정년 퇴직시 또는 55세 이후, 혹은 ② 근로자가 이직시에는 전환연금으로 계약이전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다른 세제지원적격 기업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③ 사망 및 장애 발생 ④ 심각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출 ⑤ 기업의 도산시 ⑥ 해외이주 등을

12) 사용자의 대응출연(matching contribution)과종업원의세후출연금이 고급여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판정하는검사.

제외하고는 벌과금을 부과하여조기인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연금급여 수급시기를 지나치게 늦추는 경우도 조기인출과 마찬가지로 기업연금을 통한 세부담회피의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정 연령 이후에는 최소한의 연금급여를 수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벌과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주 9) 참조).

6. 재원갹출 관련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또는 매년) 기업주와 근로자가 재원을 갹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급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적립의 의무화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특히,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지급 보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항이다. 확정갹출형의 경우 연금급여와 연금보험료 갹출이 연계되어 기금 적립 의무화 규정이 없는 반면, 확정급부형 기업연금하에서 충분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지 못하면 현행의 퇴직금제도와 같이 지급 보장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 기금의 과다적립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금이 과다적립될 경우 기업의 보험료 과다적립에 대한 손금산입에 대한 제한 없이는 기금 적립은 기업의 세부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다. 확정갹출형과 달리, 확정급부형 연금의 경우 고용주의 기여 자체의 제한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완전기금기여한도(Full Funding Limitation)[13]를 초과한 기여금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7. 투자대상의 선택, 범위, 계열사 부당지원 제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익률 제고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투자대안을 제시하고 가입자 자신이 선택하도록 하며, 가입자의 투자대안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은 해당 기업이 가입자로 하여금 계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열금융기관부당지원 금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

13) 보험수리적으로계산된당해연도의출연금이참가자에게퇴직시약정한금액을지급하기에충분한금액

근본적으로는 기업연금의 도입시기 및 도입형태 그리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향후 공적연금의 개편방향, 특히 공적연금의 임금대체율 수준과 노후소득보장수단의 적정 수준, 공적연금 급여구조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 즉, 세제지원 적격요건으로 계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제한 조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투자대안의 일정률을 비계열사 금융상품으로 제한하고, 비계열사와 계열사 금융상품은 위험 특성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시, 금융상품을 교체할 의무를 부과하고 규정 비율 이상 투자액의 일정률의 범칙금을 부과, 규정 위반시까지의 세제지원액을 일정기간 내에 세무당국에 환불하게 하는 등 무거운 제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담보대출 금지조항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출에 대한 금지조항이 필요하다. 과거, 종업원퇴직보험에 고용주가 가입하고, 적립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의 사외적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연금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업연금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연금가입자는 개인연금 계좌를 담보로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사용자도 기업연금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담보대출금의 일정률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기소득공제받은 금액과 기손금산입된 금액을 환불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9. 교육 및 통지의무

기업주는 취급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저축 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근로자별 적립금액 등을 통지하며, 노동부 및 금융감독 당국에의 보고를 의무화하는(연차보고서 및 운용보고서 등) 한편, 참여자에 대한 공시 의무화(요약설명서,

연차보고서: 연 1회, 운용 및 계정보고서: 연 4회(분기별))하여, 가입자의 기업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확보하여야 할것이다.

10. 퇴직저축제도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기업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도 공신력 있고 장기저축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금융기관으로 제한하여야할 것이다.

Ⅴ. 맺음말

본 자료에서는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의 연금과세체계의 미비점을 규명하고 기업연금 도입에 대비한 조세제도 정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행의 연금과세체계, 세부담의 적정수준 유지, 이중과세 방지,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유도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과세체계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정 집단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전체에 기업연금의 편익이 귀착될 수 있게 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지원 적격요건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개편방향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거시 · 금융정책, 노동시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연금 도입시 대규모로 적립될 기금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연금 도입에 의한 노동고용비용의 상승은 향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된 기금에 대한 적절한 규제수단, 기업연금을 통한 세부담 회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세제지원방법, 지원 수준 및 세제지원의 적격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연금의 도입시기 및 도입형태 그리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수준이 향후 공적연금의 개편방향, 특히 공적연금의 임금대체율 수준과 노후소득보장수단의 적정 수준, 공적연금 급여구조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고광수,「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도입방안」,‘ 자발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 도입 관련 포럼 제3차 발표자료, 2001.

김원식,「한국형 연금모형의 구상: 갹출형 국민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그리고 기업연금」,‘ 자발적 확정갹출형기업연금 ’도입관련포럼제4차발표자료, 2001.

신기철,「기업연금규제및감독체계구축방안(안)」,‘ 자발적확정갹출형기업연금 ’도입관련포럼제5차발표자료, 2001.

이상율,『세제측면에서본미국의사적연금제도』, 재정경제부세제실, 소득세제과, 2001.

전영준,「노후소득보장책에 대한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한국계량경제학보』, 제11권 제3호, 한국계량경제학회, 2000, pp. 1 34.

Chun, Young Jun ,“ Did the Personal Pension Increase National Savings in Korea?,2000.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16, No. 2, pp. 225~242.



정책토론리포트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 · 재정 정책과제

* 이 원고는 2001년 8월 24~25일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개최된 재정경제부 출입기자초청정책세미나 「최근경제동향과조세 · 재정정책과제」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 · 재정 정책과제

朴 寄白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成 明宰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崔 濬旭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검토하고 조세 · 재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하여 고찰

□ 경제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반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이로 인한 향후 재정수지의 악화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공적자금 등 우발채무의 규모가 크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복지수요의 증가 예상

○ 반면 개방경제하에서 금융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재정의 안전판 역할이 중요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감축을 위한 재정개혁과 더불어 향후 재정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등을 개혁

○ 국민연금의 고급여 · 저부담 구조는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초래하여,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공적자금의 회수 전망을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회수노력을 극대화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 다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여건상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차환발행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

□ 재정수지의 개선, 경기침체, 미국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대규모 항구적 감세는 부적절

Ⅰ. 서론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IMF 차입금을 조기상환한 현 시점에서 향후 조세 · 재정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 19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의 확충, 금융 ·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투명성의 제고 등 일정한 부분에서 성과

○ 그러나 아직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아르헨티나,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불안 등 대외적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우리 경제도 불안 요인이 존재하는것으로판단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었는데, 이는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생

○ 특히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지급보증채는 우발채무로 향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 존재

- 우발채무(contingency liability)는 정부의 확정채무가 아닌 잠재채무로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통계에 불포함

○ 그러나 재정수지의 급격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고도 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수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교육, 복지, 남북경협 확대 등 향후 지출 증대 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

□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금융 ·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짓는 것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자금, 국민연금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대비를 통해 재정정책의 유효성 확보 필요

○ 개방경제하에서 독립적인 금융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따라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Ⅱ. 최근 경제동향

1. 국내 경제동향

□ IMF 자금의 전액 상환 등 외환위기의 극복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성장세둔화

○ KDI는 금년도 GDP 성장률을 연초 5% 수준에서 최근 4%로 수정하였으며, 금융연구원도 2001년도 전망치를 4.5%로 수정

○ 경기여건이 가변적이므로 향후 성장률이 하향조정될가능성

<표1> 최근의실물경제동향

(단위: %)

	1999	2000	2001. 1/4	2001. 2/4
GDP 성장률	10.9	8.8	3.7	2.7
소비자물가상승률	0.8	2.3	4.2	5.4
실업률	6.3	4.1	4.8	3.5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KDI.

□ 소비와 건설 등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여 국내경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지못하고있음.

○ 금년 5월 들어 산업생산증가율이 다시 둔화되고, 설비투자와 수출부진이 지속되어 아직 경기회복시기가불투명

○ 미국 등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산업생산 ·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연결

○ 기업수익률 하락 및 부채 증가 등 기업 재무구조상의취약성잔존

□ 한편 기업경기전망지수(BSI) 및소비자기대지수(CSI) 등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

○ 도소매판매 · 건설수주 등 일부 지표가 개선추세

○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2001년 2월에 5%까지 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 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금년 2/4분기 들어 개선

□ 금융시장은 최근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5%를 밑도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는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달러 약세로 상승추세

○ 외견상 안정적이지만, 금융 · 기업 구조조정의 진척 속도와 수준,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따른 불안 요인을 배제할 수 없음.

<표2> 최근의금융시장동향

(단위: 원/달러, %)

	1999	2000	2001. 1/4	2001. 2/4	2001.8.21
원/달러환율	1142.0	1265.0	1329.0	1297.5	1283.8
종합주가지수	1028.07	5.4062	523.22	595.13	568.68
국고채수익률	9.03	6.91	7.03	6.20	4.99

주: 기말기준

2. 해외 경제 동향

□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유럽 경제도 성장세 둔화 추세

○ 미국 : 작년 10월 이후 산업생산 감소세 지속 및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금년 2/4분기에 도경기 둔화 지속

○ 일본 : 금년 1/4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 기록 및 최근 생산 · 수출 · 소비 ·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의 악화로 침체 지속

○ 유럽 : 독일과 프랑스의 성장세 둔화 및 인플레압력 상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및 남미 국가도 전반적으로약세

○ 싱가포르는금년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III. 향후 재정여건

1. 국가부채

□ 정부부채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발채무도 증가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1996년 8.8%에서 1997년 11.1%, 1999년18.5%, 2000년 19.4%로계속 증가 추세

○ 정부보증채무 등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실현될가능성존재

– 지급보증 규모가 2000년에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추가조성된 40조원의 공적자금을 감안하면 우발채무규모도증가

<표3> 중앙정부부채

(단위: 조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부채 (GDP 대비비중)	36.8 (8.8)	50.4 (11.1)	71.4 (16.1)	89.7 (18.5)	100.8 (19.4)
국채	25.7	28.6	46.6	65.8	76.3
차입금	8.0	18.5	21.8	21.4	21.8
지급보증	7.6	13.0	72.0	81.5	74.5

주: 기말기준

□ 외국에 비해 정부부채의 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증가 추세

<표4> 주요국가의GDP 대비부채추이

(단위: %)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OECD 평균
1990	61.5	39.5	42.0	66.6	61.0
1995	76.2	59.3	57.1	74.5	73.6
1999	105.3	65.0	60.6	65.3	73.0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0.12.

○ 다만, OECD의 주요선진국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우발채무를 포함(37% 수준)하더라도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임.

2. 공적자금

□ 그동안 누적된 부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투입

○ 공적자금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켜 경제를 회생시키고 IMF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는등의 성과가 나타남.

○ 다만,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총 137.1조원으로서 재정 측면에서 보면 부담 요인

<표5> 공적자금현황(2001. 4. 30 기준)

(단위: 조원)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규모	53.7	12.2	19.2	14.2	37.8	137.1

자료: 재정경제부.

□ 2003 2006년까지 공적자금 원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는 기간

○ 부실채권, 출자지분 등도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불가피하게 자금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표6> 공적자금상환계획

(단위: 조원)

	채권원금상환(A)	재정융자상환(B)	합계(A+B)
1999	0.6	-	0.6
2000	4.1	-	4.1
2001	1.9	1.3	3.2
2002	5.7	3.9	9.6
2003	21.9	5.5	27.4
2004	16.1	6.0	22.1
2005	18.0	6.1	24.1
2006	16.1	5.6	21.8
2007	-	3.6	3.6
2008	0.4	2.1	2.5
2009	-	0.5	0.5
2010	-	0.2	0.2
2011	-	-	-
계	84.9	34.8	119.7

주: 2001년 4월말 현재 기 발행된 채권을 기준으로 함(잔여 채권 19.1조원).
자료: 재정경제부.

3. 기타 재정여건

□ 경제성장률둔화로인한재정부담

○ 세계적인 IT 산업의 극심한 불황, 미국, EU, 일본 3대 선진 경제권의 동시적 저성장 기조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우리의 새로운 대외경쟁자로서 중국이 부상하면서해외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 대내적으로 잠재적 성장 여력이 낮아짐에 따라 성장을 통한 자연치유적 재정 건전화만을 기대하기는 곤란
- S&P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예측: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복지수요의증가

○경제위기이후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등 각종사회안전망확충에따른지출수요증대
- 실업급여: 103억원(1996년)→8,708억원(1999년)→4,708억원(2000년)

○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해 지면서 재정부담의증가예상

○ 미국이 GDP의 7%, 일본이 GDP의 10% 정도의 사회보장비를 부담하는 반면 우리는 GDP의 2% 정도만을 사회보장비로 부담하므로향후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
- 주요 기금재원도 수급 불균형으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위한새로운재정지원소요증가

○ 정보화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에 필요한 정보인프라의구축을위한재정지원

○ 지식경제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관련 재정지원

IV. 조세 · 재정 정책방향

1. 건전재정의 확보

□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정재정 기조의 확립이 중요

○ 다만,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내수 진작이 필요하고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자금중개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 적자재정, 인플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부문에서의 제한적 경제정책이 필요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추구가 바람직

○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부채 증가추세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우발채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전재정 확보 필요

○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므로위기시재정의안전판역할이긴요

○ 세입의 조정보다는 재정건전화특별법 등 재정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한 지출 통제가 바람직

□ 복지지출의 효율화

○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 서민층 보호 · 육성을 위한 복지지출 수요 급증

○ 복지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가부채 증가요인이되지않도록하고

○ 기존의 실패한 유럽형 복지제도 대신 생산성 증진 유인을 갖춘 자립형 · 시장친화적 · 생산적 복지제도의확립이바람직

□ 국민연금의 효율화 · 적정화

○ 현재의 저부담 · 고급여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것이 바람직

○ 국민연금은 초기에 가입자 증가 등으로 흑자 누적이 예상되지만 현행 수급구조로는 향후 수지적자반전이예상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갹출 및수혜구조의 개선 필요

2. 공적자금 상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향후수년간안정적재정운영에있어중요한과제

○ 2003 2006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환스케쥴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능

□상환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을극대화함으로써국민부담을최소화할필요

○ 출자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주식매각 여건을조성

○ 주식매각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가능한 조기에 민영화

□ 공적자금의 국민경제적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므로 공적자금의 상환도 장기에걸쳐이루어지는 것이바람직

○ 다만, 장기채권시장이 미흡한 우리나라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5년 만기위주로 채권을발행하여단기간에공적자금상환부담이집중

○ 지급보증채의 만기(3 7년)가 외국보다 단기인 점을 고려하면 차환 발행의 불가피성이

발행시부터 존재

- 미국 30년, 헝가리 20년, 폴란드 15년 등 외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조달

※ S&L 위기시의 미국 REFCORP(Resolution Funding Corporation)도 30년 이상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고, 일본은 주택금융전문회사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신금융안정화기금으로 향후 15년 동안 상환하도록 한 전례

3. 조세정책방향

□ 재정 건전화 관련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정 및 경기여건을 감안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유지를 바탕으로 함.

○최근 조세부담률이 22.0%(2000년)에 달하였으나향후에는당분간이에미달할것으로전망

- OECD 조세부담률 평균: 27.6%(1998년)

○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높은 수준은아님.

□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된 누적 재정적자 규모와재정 건전화의필요성을 감안할 때 세제는다소보수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

○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세원 침식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재정수지 악화 및 재정기능약화초래 가능성
- 특히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된 대규모 지급보증채의 만기 도래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안정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세제 운용이 필요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적 세수기반 확대와, 넓은 세원 · 낮은 세율 원칙 확립에 의한 세원 확충 및 왜곡된 납세풍토개선을통한재정건전화추진이바람직

○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를 통한 세원 확충, 포괄주의적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무분별한 비과세 · 감면의 축소와 이를 통한 과세의 형평 제고 필요

○ 환경친화적 세제의 구축 및 담배 · 주류 등 비가치재에 대한소비세의 죄악세 기능강화

그리스의 조세개혁

權 五 盛 초청연구위원(xxxxxxxxxxxxxxxxx)

그리스는 1980년대 중반 이후[1],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공공 기간시설의 확충, 방만한 중앙정부 행정의 정비, 공익사업의 운영적자 보전 등을 목표로 정부지출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세입은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여 1990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16%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리스가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주요 현안과제는 세입 확대를 통한 재정수지 안정이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 10년 동안 조세부담은 유럽연합(EU)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 전체 세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다. 세입구성은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가 전체 세입의 73%로 국제적인 기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OECD의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는 지금까지 전반적인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동안 조세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복잡하고 불투명한 조세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과 기업 부문에 관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납세순응(tax compliance)의 향상, 세원(tax base)의 확대, 조세행정의 현대화 노력 등 크게 세 가지면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강력하고 일관된 세무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행 조세체계는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리스정부는 지금 이 시점, 2002년에 시행될 수 있는 전면적인 조세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OECD보고서를 참고하여 그리스 조세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현행 조세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방향에 관해논의하고자 한다.

Ⅰ. 그리스 조세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지하경제 종사자들의 조세회피는 정식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

1) 그리스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지출이 매우 적어 이에 따른 세수확보압력도 OECD국가평균치보다훨씬낮았다.

고 있으며, 지급 능력(ability to pay)과 관계없이 특정 사회집단에 주어지는 면세혜택의 증가는 조세의 수평적 · 수직적 형평성[2]을 더욱 해치고 있다. 더욱이 조세범(租稅犯)에 대해 잦은 사면의 기회를 줌으로써 과세의 불공평성을 심화시키고 조세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1995년 탈세금액이 GDP의 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스의 사회 · 경제적 배경에는 납세순응 및 세금징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많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하경제 등 비공식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밖에도 비효율적인 조세행정, 은행의 비밀보장제도, 토지소유등록의 미흡, 세무당국간 정보교환 부족 등이 납세순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조세법령(Tax Acts)의 계속적인 수정과 세법의 복잡성은 납세자를 혼동시키며 여러 종류의 세제감면조항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는 계속 증가하는 정부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 확보로 지난 10년간 GDP 대비 세입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개인소득세의 증가는 납세순응 향상 및 인플레 요인 상승을 반영하고 있고 소비세의 증가는 1987년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세원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과 재산세는 세율이 인상되고 농업

2) 수평적 형평성은똑같은 소득수준과 가족구조를 가진 사람은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직적 형평성은 지급능력을나타내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더많은세금을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3) 그리스에서 전통적으로 농부는 사회보장세와 재산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 전체 고용에서 농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중반 35%에서 1998년 20%로줄어들었다.

OECD의많은국가들과비교해서그리스는지금까지전반적인조세제도를개편하는데체계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 그동안조세제도에많은변화가있었으나부분적으로만이루어져왔기때문에복잡하고불투명한조세체계를형성하고있으며특히, 개인과기업부문에관대한세제혜택을주는특징을지니고있다.

<표 1> 그리스 일반정부의 세입수준 및 증가비율

(단위: GDP 대비%)

	수준	증가비율				수준
	1980	1980~85	1985~90	1990~95	1995~99	2000
전체세입	25.2	4.6	0.0	3.8	5.5	40.0
개인소득세	3.6	0.6	-0.2	0.7	1.9	6.5
사회보장기여금	9.5	2.4	-0.3	1.2	1.1	13.8
법인세	1.5	0.2	0.1	1.2	1.3	4.3
소비세	10.7	1.4	0.4	0.8	1.3	15.4

자료: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and OECD
Chiara Bronchi(2001),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291에서재인용

종사자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증가하였다[3]. 전체 세입의 급속한 증가는 그리스정부가 당면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 조세체계는 향후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관대한 연금제도와 인구의 노령화, 공익사업 운영적자의 누적,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이전금 축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차 세수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압력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가장 높은 그리스 입장에서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래의 정부지출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

그리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지하경제 종사자들의 조세회피는 정식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특정 사회집단에 주어지는 면세혜택의 증가는 조세의 수평적 · 수직적 형평성을더욱해치고있다.

요구된다고 할 수있겠다.

1990년대 초반부터 그리스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이공공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재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재정지출과 관련된 것이고 지방정부의 조세권한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중복되어 과다한 재정지출의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

Ⅱ. 현행 조세체계의 주요 특징

1. 조세행정과 납세순응

1990년대 중반 이후 그리스정부는 조세행정의 구조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세정책의 목표는 조세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및 정보 유통의 확대를 통해 탈세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난 수년간 그리스의 징세비용은 OECD 국가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데 이는 특히 개인소득세의 경우, 과세소득의 산정과 감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많고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은 결국 탈세로 이어져 1996년 연체금 징수가 전체 세입의 3%에 이르고 있다.

조세행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정부는 1994년과 1995년 예산으로 조세업무훈련학교(School of Training)와 특별세무조사국(Special Bureau of Tax Investigation)을설립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7년 4월에 업무를 개시한 특별세무조사국은 심각한 탈세와 밀수사건을 적발하였으며 1999년에 벌금으로 거둬들인 수입만 490억 드라크마(그리스 화폐단위)에 달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방대하고 종합적인 조세정보체계(Tax Information System)를구축하고 조세행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재정 · 금융 정보의 용이한 접근, 일관된 세무업무의 집행, 조세행정비용의 절감, 납세신고의 정확한 감독 등을 가능케 하였다. 더욱이, 2001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조세정보 및 납세신고서 양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세행정과 납세순응을 유도하고 있다.

2. 개인소득세

일반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개인소득세는 과세구간을 여섯 계층으로 구분하여 0에서부터 45%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세율의 누진성은 다른 OECD국가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많은 종류의 세액공제와 자본소득에 대한 면세 또는 낮은 세율을 고려할 때, 개인소득세에 의한 공평한 소득재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볼 수 있다.

근로소득은 개인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의 징수대상이다. 고용주와피고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총임금의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가나 중개상 등의 자영업자는 총수입의 15%에서 37% 정도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내고 있으며 농부는 아예 면제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똑같은 사회보장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더 적게 내기 위해 수입을 축소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로 인하여 그리스에서는 자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현재 전체고용의 45%가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은 곧 고용주의 노동비용에서 근로자의 세후(稅後) 순임금을 뺀 조세쐐기(tax wedge)를 나타낸다. 1999년 평균생산노동자(average production worker)의조세쐐기는 노동비용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비용의 증가에 따라 조세쐐기가 증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한계조세쐐기(marginal tax wedge)는 44%로서 유럽연합국 평균치보다 비교적 낮은 셈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새로 취업하는 경우, 실업수당은 면세되고 취업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높은 이유로,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이 대부분 OECD국가들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정년 후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의무근로기간이 짧은 것도 젊은 노동력을 지하경제로 유인하는 요인이 되어심각한문제가되고있다.

법정세율의 누진성은 다른 OECD국가들보다 다소 높은수준이나소득수준에관계없이주어지는많은 종류의세액공제와자본소득에대한면세또는낮은 세율을 고려할 때, 개인소득세에 의한 공평한 소득 재분배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고볼수있다.

그리스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와 분배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축수입에 대한 과세가 불공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정부공채와 기업채권 이자에 대한 세율은 10%이고 예금이자에 대한 세율은 15%인 반면, 국내기업의 주식배당과 자본이득은 면세되어, 이러한 차별과세가 가계저축과 기업자금의 조달수단 결정에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거주주택투자에 대한 특별한 세제우대혜택은 거주지역의 개발 규제와 더불어 땅값 상승을 부추기며,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부터 주택투자에 자본을 이동시키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소비세 및 환경세

소비세는 그리스정부의 주요 재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1987년에 16%의 세율로 처음 도입되었고 1998년에 18%로 세율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차별하여 생활필수

품과 신문이나 책과 같은 문화상품에는 각각 8%와 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노력으로 과거 수년간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많이 향상되었다. 최근에는 소비세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9년 말까지 유럽경제통화동맹에 가입하기 위한 물가정책으로 여러 종류의 간접세를 인하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지수를 낮추었으나, 장기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와는달리, 자동차, 석유류, 주류, 담배 등의 제품에는 별도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최저세율은 다른 유럽연합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환경요소를 감안한 조세체계는 특히 교통과 에너지 부문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세로 유연(有鉛)휘발유를 무연(無鉛)휘발유보다 6% 높게 차별과세하였으며, 연료절약형 자동차에는 세제감면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OECD의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의연구에 의하면 그리스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을 더욱 억제하고 환경외부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왜곡된 조세체계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7년 그리스 대형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는 유럽연합 집행부가 설정한 최고상한치를 12%나 초과하였다. 이는 그리스 전력의 약 66%를 생산하는 원료인 석탄에 대한 과세가 전체 사용량만을 고려하고, 생산원료의 탄소함유량이나 오염배출량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자원 및 수질오염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가계용수, 농업용수의 사용과 폐수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 및 가격에 대한 왜곡은 수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의 환경외부문제도 해결하지못하고있는 실정이다.

4. 법인세

법인세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그리스 기업의 영업이익과 그리스 국내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기업경비는 물적 자본의 감가상각비, 임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있고, 기업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법인세로부터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부채를 선호하게 되는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표준 법인세율은 2001년부터 40%에서 37.5%로 인하되었고 2002년에 다시 35%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법인세 차별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간의 과세차별도 2001년에 폐지되었다. 그리스는 다양한 법인세제감면의 결과, 실효법인세율은 상당히 낮아 1990년부터 1996년 기간 중실효법인세율이 법정세율보다 12%나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특정 부문의 기업이나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시장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그리스 법인세의 감면혜택은 기업부문별 · 지역별로 법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나, 과세표준의 전액 또는 부분적 공제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주로 낮은 법인세율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소기업, 집단투자기관 등에

적용하는 한편, 해양 및 운송회사는 면세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에너지 보존,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및 농수산업, 건설업, 제조업 부문의 생산적인 투자비용에 대해 40%에서 100%에 이르기까지 소득공제하고 있어 사실상 경제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세제우대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부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도 증가하나 비법인기업의 경우는 조세부담이 일정하고, 이와 같은 법인세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도 비법인기업이 더 적게 부담하고 있다. 법인조직보다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자를 우대하는 이러한 조세체계는 소규모의 비법인기업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윤을 감소시킴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고용 창출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재산세와 지방재정

재산세는 전체 GDP에서 단지 1.3%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마저 재산세의 70%를 동산(動産)거래에 부과하는 인지세(stamp tax)에 의존하고 있다. 1974년에 처음 도입된 부동산세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대한 보조 때문에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토지 등록의 부재(不在)는 과세를 어렵게 하여 1996년 부동산세는 전체 세입의 0.14%만을 차지한 반면, 징세비용은 이보다 커 전체 세입의 1.1%에 이르고 있다.

그리스 지방정부의 조세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1996년 지방정부의 세입은 전체 세입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지출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이전금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보건,

법인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특정 부문의 기업이나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시장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그리스 법인세의 감면혜택은 기업부문별 · 지역별로 법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나, 과세표준의 전액 또는 부분적 공제 형태로제공되고있다.

교육,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치밀한 감독으로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지방행정 및 지방정부지출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세체계의 개편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III. 그리스 조세개혁의 과제

아직까지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리스 정부는 2002년 전면적인 조세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스가 현재 당면한 조세정책과제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조세개혁은 기본적으로 세원의 확대와 세율의 인하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왜곡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불공평성과 조세회피 및 탈세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부담을 안고 있는 그리스정부로서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전반적인 조세부담을 낮출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세개혁과 함께 공공지출개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 조세개혁과 관련된 주요쟁점과 그리스 정부의 당면과제를 항목별

조세개혁은 기본적으로 세원의 확대와 세율의 인하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왜곡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불공평성과 조세회피 및 탈세를 줄이는데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로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세체계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조세개혁과 관련해 그리스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평한 세법과 투명하고 일관된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매년 빈번하게 수정 · 보완되는 세법의 새로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징세와 납세순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세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그릇된 통념을 깨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조세범 사면관행도 사라져야 할것이다.

또한, 아직도 탈세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세무집행을 강화하고 조세체계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의 개인비밀보장제도를 점차 폐지하고, 토지와 재산내용을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개인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2. 조세부담의 재분배

전반적으로 그리스의 조세부담은 국제수준과 비교해볼 때 그다지 높지 않으나 그 분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보다 불공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확대하는 대신 다른 세율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왜곡을 초래하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을 확대하고 부동산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줄이는 등 세원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제고시킬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세출예산을 소득재분배에 책정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정보자료의 미흡으로 포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보조금 및 세금 환급 등이 조세부담의 불공평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고할 수 있겠다.

3. 세원의 확대

개인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세액공제를 줄임으로써 세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일정한 소득공제의 가치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의 세제감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재평가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을 낮추어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원을 확대하는

대신 세율을 인하하면 탈세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세가 원천과세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세제의 다소 높은 누진성은 납세순응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수가 전체고용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의 귀속제도(imputation system)를 점차 폐지하고 과세소득을 평가하는 투명한 회계제도가도입되어야 할것이다.

개인소득세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세도 세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소득세를 더욱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세원의 확대는 다른 종류의 자본소득에 대한 차별과세를 폐지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일 것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이자형태로 지급되는 자본소득에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됨으로써 저축형태의 투자에 자본이 집중되는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노르웨이나 핀란드와 같이 모든 자본소득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인세는 약 25 30% 수준으로 내리는 한편, 주식배당, 이자수입, 자본이득등 세 가지 형태의 자본소득뿐만 아니라 연금기금과 집단투자기관으로부터 분배되는 이자 및 배당에도 법인세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자거주주택 투자에 대한 관대한 세제우대혜택은 가계저축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자거주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저축배분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상승압력을 완화하는효과도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소유자거주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저축배분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상승압력을완화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4. 기타 세목별 개편과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스정부는 최근에 최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면해주었으나 연금제도 개혁과 함께 전체적인 급여체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숙련노동자의 경우,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노동자 총소득의 50%에 달하고 노동비용이 총소득의 1.3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급여세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기여금의 축소는 전체 근로자에게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그들의 순수입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개혁은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를 선호하고 지하경제로 노동을 유인하는 왜곡을 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것을 지향해야할 것이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과세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환경오염 절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석탄에 대한 과세는 탄소 함유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환경정책도 보다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든 연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과세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환경오염 절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석탄에 대한 과세는 탄소 함유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을반영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용수관련 부과금도 수질오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스스로 채택하게끔유도해야 할것이다.

현재 기업부문에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우대혜택을 축소, 정비해야한다. 특정 목표가 부실하거나 과다한 법인세제혜택은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법과 조세행정을 복잡하게 하여 순응비용을 증가시키고 조세회피수단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우대는 연구개발, 환경보호, 직업훈련 등에 국한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세입의 증가는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균형을 이루고,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비법인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조세제도의 왜곡을 시정하고 공정경쟁의 장을 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재산세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세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을 재분배하고 토지에 대한 초과수요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포착하는 효과도 있다. 토지 및 부동산재산을 확고한 세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와 시장가격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립토지등록제도(National Land Registry)의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재원으로 주로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입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일조(一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환경오염지역의 생산자에게 환경세를 직접 부과함으로써 조세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참고 문헌

Chiara Bronchi, *Options for Reforming the Tax System in Greec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291, April 2001.

* 10월호에는 <체코의 조세개혁>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책흐름

1.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2. 재정3법 제 · 개정 추진현황
3. 전자정부 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개시

2001년 정기국회제출 세제개편(안)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정책과에서 2001년9월3일에발표한「2001년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의전문입니다.

Ⅰ. 세제개편의 여건 및 기본방향

1. 세제개편의 여건

□대내적으로는복지지출증가 · 사회간접자본확충등늘어나는재정수요를세부담의공평성을제고하면서효율적으로뒷받침할수있도록조세체계를개편할필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대외불안요인을 흡수하여안정적 성장을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조속한균형재정기조의정착이무엇보다도중요

○한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회복할수 있도록건전 재정기조를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 및 기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적노력이필요한때임.

□대외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세계시장의 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은유리한 투자및 기업환경을조성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각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하는만큼외국보다높은세율체계를유지할수없는등 국가간조세정책의상호의존성이크게높아지고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낮은 세율 등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유지하면서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를뒷받침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음.

2. 세제개편 기본방향

□금년도의 세제개편은 중장기 세제운용방향(넓은 세원 · 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쉽고간소한 세제)의큰틀속에서

○비과세 · 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세율인하,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등을통해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중장기적 세원 확충을지원하는데중점을두어추진

※세금경감규모는 조세부담률이 현재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2조원이내로함.

□첫째,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광복절경축사후속조치)

○외국의 소득세율 인하 동향에 맞추어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 40% → 9 36%)하여 지방세를 포함하여최고세율이 40%를넘지않도록함.

○모든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되 중산층이하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많이경감될수있도록조정

○경로우대 · 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하고 장애인의 특수교육시설에서의교육비도교육비공제대상에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 어업용 기자재 범위를확대하여농어민의영농비부담을경감

□둘째,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어 「고세율 · 다감면」 구조로 운용되어 온 양도소득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저세율 · 소감면」 구조로전환하는등양도소득세제의정상화를도모

봉급생활자및자영사업자세부담경감액

◆총경감액: 약1조 7,490억원(소득세1조 5,900억원, 주민세1,590억원)

◆봉급생활자
- ○1조 2,430억원(소득세1조 1,300억원, 주민세 1,130억원), 평균15% 경감, 1인당평균경감액22만원
- ○금년6월임시국회에서신용카드소득공제확대(공제율10 →20%, 공제한도 연300 →500만원)에따른경감액2,500억원포함시총1조5천억원경감

◆자영사업자
- ○5,060억원(소득세 4,600억원, 주민세 460억원), 평균12% 경감, 1인당 평균경감액37만원
- ○금년 6월 임시국회에서의 신용카드매출액 소득세감면 확대(카드매출액의 20% 또는 매출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에 따른 경감액 1,100억원포함시총6천억원경감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20 40% →9 36%)시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23%)하고, 감면은 대폭 축소하여 소득세 본래 기능을강화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양도에대해서는 30% 단일세율로과세

□셋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조성

○광범위한 감면으로 과세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하여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47.3% → 30.8%)하고

- 초과유보소득과세(15%)를 폐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지원

※법인세율(16,28%)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현행수준유지

○법인간의합병,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의한상시적기업구조조정을뒷받침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IT,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광복절경축사후속조치)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현행 제조업 등 22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확대(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8개업종추가)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확대하고수도권투자에대하여도공제허용
- 자동화·정보화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를 공제대상자산에추가
-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우대(매출액의3% →5%)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세제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가산세제도를정비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차별적 규제를폐지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차대조표공고의무및불이행가산세를 폐지하고 과도한증빙불비가산세율을적정수준으로인하(10% →2%)

□넷째, 장기안정적인세입기반을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하여조세감면제도를대폭축소

○연구개발투자(R&D) 등 성장잠재력 배양에 필요한 감면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감면등은현행유지

○중복지원 등 과도한 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 등을 정비하여 180개 감면규정 중 59개감면을축소또는폐지

○소득세 과세방식을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유형별포괄주의방식으로전환

□다섯째,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개선하고, 국민불편을완화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인간 작성하는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인지세과세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20%)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하여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정착을 통한 과세표준양성화를지원

○부동산양도시 「등기전양도소득세사전신고제」를폐지하고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 인상(10만원 → 20만원)

□이러한 세제개편을 위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조세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등 4개 세법개정안을제출

Ⅱ.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1. 종합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55)

현 행	개 정(안)
○10 40% (4단계) - 1천만원이하 : 10% (11%) - 1 4천만원 : 20% (22%) - 4 8천만원 : 30% (33%) - 8천만원초과 : 40% (44%) ※( )는지방세포함	○소득세율을현행보다10% 인하 - 9% (9.9%) - 18% (19.8%) - 27% (29.7%) - 36% (39.6%)

<개정이유>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근로의욕 및 사업의욕을고취하고

- 성과급의확산및과세자료양성화에따른세부담증가를완화

○최근 경쟁력 강화·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tax competition)하고 있는 외국의 세제 개편추이에 대응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수준이 40%를넘지않도록조정

※최근선진국소득세인하동향

- 미국: 2006년까지단계적으로소득세율 15 39.6% → 10 35% 인하
- 독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세율 19.9 48.5% → 15 42% 인하
- 일본: 1999년소득세최고세율50% →37% 인하

※최고세율비교(지방세포함세율)

한국(안) 36(39.6), 미국 38.6(45), 일본 37(50), 영국40(40), 대만 40(40)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2. 근로자 세부담경감

가. 근로소득공제확대(소득세법 §47등)

현 행	개 정(안)
○근로소득공제 <일반급여자> - 500만원이하 : 전액 - 500 1,500만원 : 40% - 1,500 4,500만원: 10% - 4,500만원초과 : 5% <일용근로자> - 일5만원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중 ·50만원이하분: 45% ·50만원초과분: 30% - 한도: 60만원	○근로소득공제확대 - 좌 동 - 45% - 1,500 3,000만원: 15% - 3,000 4,500만원: 10% - 좌 동 - 일6만원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조정 - 좌 동 - 한도: 40만원

<개정이유>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로소득공제를확대하되,

- 면세자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연급여 3,000만원이하구간의공제율을확대

○일반급여자의 면세점 수준에 맞추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도확대

○세율기능을약화시키는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축소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적용

나. 노인 · 장애인에대한소득공제확대(소득세법 §51)

현 행	개 정(안)
○경로우대공제와장애인공제 - 65세이상노인을부양하는경우1인당연 100만원의기본공제에더하여50만원추가공제 - 장애인을 부양하는경우1인당연 100만원의기본공제에더하여 50만원추가공제	추가공제액상향조정 · 50만원→ 100만원

<개정이유>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세부담을경감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과세기간부터적용

다. 교육비소득공제확대(소득세법 §52①등)

현 행	개 정(안)
○대학생교육비공제 - 공제대상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대학 - 공제한도: 1인당연300만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공제대상교육기관에추가
<신설>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신설 - 공제대상 교육기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등 - 공제한도: 1인당연150만원

<개정이유>

○원격대학(일명 '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 수여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의 수업료 등을 교육비소득공제대상에포함.

※원격대학 현황 : 9개(4년제 7개, 전문학사 2개), 학생수 5,300여명

○장애인의재활을지원하기위하여장애인이사회복지법인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지급하는 교육비도 소득공제허용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3. 중산 ·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가. 농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05)

현 행	개 정(안)
○농 · 어업용기자재영세율적용 - 적용품목(총153종) · 비료, 농약, 사료 · 동력경운기등농업용기계48종 · 어망등어업용기자재40종 · 동력천공기등임업용기자재15종 · 육추기등축산업용기자재50종 - 적용방식 · 사업자가 세전가격으로 농 · 어민에게기자재를판매	○적용대상기자재확대 - 대상품목추가 · 농업용 PE필름, 하우스용파이프, 양어장용하우스비닐등 - 적용방식개선(추가품목에한함) · 농어민에게영세율혜택이귀속될 수있도록사업자는부가가치세가 포함된가격으로판매하고농어민 이환급받도록사후환급제도도입

<개정이유>

○그 동안 영농비의많은부분을구성하고 있으면서도 타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 때문에 세제지원을 못하였던 품목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지원

○종래의 영세율 적용방법으로는 영세율 적용효과가 중간 유통과정에서 흡수되어 농어민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못하는문제가있어

- 새로이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전용의 소지도 줄이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환급제도도입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공급하는분부터적용

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소득세법 §25①)

현 행	개 정(안)
○전세금 ·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임대시 -보증금 · 전세금 등의 정기예금이자상당액만큼의임대료수입이있는 것으로 간주(간주임대료)하여 소득세과세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국세청장이정하는이자율	○주택임대의 경우는 간주임대료 과세폐지 - 다만, 상가는현행유지

<개정이유>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세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소지를 해소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지원(2001년1월『물가및서민생활안정대책』)

※다만, 보증금을 은행에예금하고 이자를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배당소득으로 과세

<적용시기>

2001년1월1일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III.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

1.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조정(소득세법 §104)

현 행	개 정(안)
○개인양도소득세율 - 2년이상보유 ・과세표준3천만원이하20% ・과세표준3 6천만원 30% ・과세표준6천만원초과40% - 2년미만보유 40% - 미등기양도 65%	○종합소득세율과일치 - 1년이상보유 ・1천만원이하 9% ・1 4천만원 18% ・4 8천만원 27% ・8천만원초과 36% - 1년미만보유 36% - 미등기양도 60%

<개정이유>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고 지가가 안정되는 등 달라진 부동산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소득세 본래기능에 충실하도록양도세율을개편

※주택보급률: 94.1%(2000년)
지가상승률: 최근수년간연1% 내외

-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세율체계를 단순화(23% 인하효과)
- 부동산 단기거래 구분기준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부동산거래를제약하는요인제거

※실가가적용되는 부동산 투기거래, 주식 단기거래의 경우도1년을기준으로구분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2.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소득세법 §104)

				현행	개정(안)
상장·등록주식	대주주	중소기업발행주식		10%	좌동
		대기업 발행주식	1년이상보유	20%	
			1년미만보유	20 40%	30%
	소액주주			비과세	좌동
비상장주식	중소기업발행주식			10%	좌동
	대기업 발행주식	소액주주및 대주주1년이상보유		20%	
		대주주1년미만보유		20 40%	30%

※대주주의범위: 지분비율3% 이상또는시가총액 100억원이상

<개정이유>

○주식 양도소득 세율체계는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아니므로 현행수준유지

- 다만, 장기보유를 우대한다는 정책목적과 양도세의 최고세율을 감안하여 대주주의 단기보유 주식거래분에 대한현행누진세율을 30%의단일세율로전환
- 외국의 경우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래가 빈번하고 복잡한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Flat rate)로과세하는것이 일반적임.

※주요국의주식양도소득세율: 아이슬란드(10%), 이탈리아(12.5%), 미국(10% 20%), 프랑스(16%), 일본・헝가리・아일랜드(20%), 영국(23 40%),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28 30%)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IV.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법인 · 특별부가세 및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폐지(법인세법 §9 등)

현 행	개 정(안)
○법인세율 - 과세표준1억원이하분: 16% - 과세표준1억원초과분: 28% ○특별부가세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15% 세율로과세 ○초과유보소득(총유보소득- 적정유보소득) 과세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또는대규모기업집단소속)의적정유보를 초과하여 유보하고 있는 유보소득에대하여 15%의세율로 법인세추가	< 현행유지> < 폐지> - 다만, 투기재발시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장치마련 < 폐지>

<개정이유>

□현행법인세율은외국에비해낮은수준이고세율인하 시세수감이매우큰점을감안하여현행유지

<참고> 주요국의법인최고세율현황

(단위: %)

	미국	이태리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중국	캐나다	한국	대만
법인세율	35	36	33.3	30	30	25	30	27	28	25
지방세포함	40.8	40.25 44.5	36.44	40.87	30	38.6	33	34.12 46.12	30.8	25

※미국의경우 뉴욕주기준

※대만은 25% 단일세율이나 우리의 경우 전체법인의 약 90%가 16%의낮은세율적용

□현행 특별부가세는 외국에 유사 사례가 없는 예외적인 제도이고 과세대상의 70%가 감면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으므로폐지

○기업이부동산을쉽게 처분할 수있는여건을 조성하여 상시구조조정체제를뒷받침

※부동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부담률(지방세포함) : 47.3%→30.8%

○다만, 투기재발 등 부동산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법인세를추가과세할수있는근거마련

□초과유보소득과세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금융을저해하는측면이있고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 법인세율을 폐지하는 국제적인 추세를반영하여폐지

※독일: 법인세율 30%(유보분 40%)⇒ 25%로 인하 (2001년)

<적용시기>

○특별부가세 폐지 :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적용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폐지: 2002 사업연도부터적용

2. 상시 구조조정 지원

가. 합병 · 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 확대(법인세법 §45등)

현 행	개 정(안)
○법인이합병 · 분할시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승계 -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승계불인정 -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예외인정 · 퇴직급여충당금및유가증권의평가손익등 · 이월결손금(장부가액으로 합병시, 다만, 특수관계자간 합병은 제외)	○다음의세무조정사항도승계허용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 장기채권등의현재가치할인차금 - 조특법상의준비금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승계허용

<개정이유>

○법인의 합병 · 분할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과 조특법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대해 승계를허용하지않는경우

- 그 금액이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다시 계상되어 법인세를이중으로 부담하는등의문제가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기업의 구조조정을지원

○합병은 주로 특수관계법인간에 이루어지고, 또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조세회피소지가없는점을감안

<적용시기>

개정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승계받은분부터적용

나. 구조조정을 위한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38의3)

현 행	개 정(안)
<신설> ※현물출자에대한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38) ○5년이상사업을영위한 내국법인이 보유주식 ·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경우 -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 ·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설법인 주식양도시까지과세이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해외자회사의주식을현물출자하여해외법인을신설하는경우 - 해외출자주식을현물출자함에따라 발생한양도차익은3년거치후3년간분할익금산입 ○다만,다음의경우에는익금에산입하지않은잔액을전액익금산입 - 내국법인이당해주식을양도하거나사업을폐지하는경우 - 출자받은해외법인이폐업 · 해산하는경우

<개정이유>

○내국기업이 외국기업과 기술 · 사업상의 제휴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해외투자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현금유입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지원

- 내국기업의 구조조정과는 달리 국가간 과세권 경합에 따른 조세채권 확보의 어려움과 고용 · 부가가치 창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과세이연대신에분할익금산입제도도입

<적용시기>

개정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다. 법인분할시 과세이연된 세금의 추징요건 개선(법인세법 §47 등)

현 행	개 정(안)
○법인이물적분할(현물출자포함)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등으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였다가 -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당초보다낮아진때에과세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함으로써당초신설법인의주식을합병법인의주식과교환하거나 -스톡옵션의 행사로 지분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속 과세이연허용

<개정이유>

○외자유치·사업상 제휴 등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모기업의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 계속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2차 구조조정을지원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합병하는분부터적용**

라. 현물출자(분할 포함)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117①)

현 행	개 정(안)
< 신설>	○법인이 합병하거나 현물출자(분할 포함)하여법인설립시주식이전에 대해증권거래세면제

<개정이유>

○상시 구조조정체제하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지원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결정·경정하는분부터적용

마. 금융지주회사의수취배당익금불산입제도개선(법인세법 §18의2)

현 행	개 정(안)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취배당은지분율 80%(상장·협회등록법인40%)를기준으로90% 또는60% 익금불산입 - 단, 자회사가계열회사에출자하거나기타법인에1% 초과출자한경우에는익금불산입금액을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경우에는기타법인에 1% 초과출자한때에도예외인정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관투자가인 은행·증권회사 등으로서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이 본연의 업무이고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사례가있음을감안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배당받는분부터적용

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허용(법인세법 §51의2)

현 행	개 정(안)
○다음법인이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배당할경우배당금액을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SPC)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90% 이상을배당할 경우에도소득공제허용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하여 유동화전문회사(SPC) 등과동일하게지원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배당하는분부터적용

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간접출자에대한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55①)

현 행	개 정(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직접출자하는경우 -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조합을통하여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출자와 동일하게세제지원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직접출자의경우와동일한수준으로지원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양도하거나지급받는분부터적용

아. 기업구조조정조합의주식양도차익 비과세요건 개선(조세특례제한법 §13②)

현 행	개 정(안)
○거주자가기업구조조정조합을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비과세요건: 다음의방법으로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일것 - 창업시의자본금납입 - 창업후 7년내 유·무상증자 또는 채무의출자전환	○출자기간제한(창업후7년) 폐지 ※구조조정대상기업: 부도기업, 회사정리·화의·파산을법원에신청한 기업, 은행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등

<개정이유>

○구조조정은 통상 창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것임을감안하여출자기간제한을폐지

<적용시기>

개정법공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3. 성장잠재력 배양과 투자활성화 지원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현 행	개 정(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대상업종: 제조업등22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및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공제율: 10%	- 30개업종으로확대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및탐사업 ‥지도제작등 ·농업중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어업중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교육서비스업중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및배급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 2001년8월 11일여야경제정책협의회합의사항

<개정이유>

○기업의설비투자촉진을통한경기활성화지원

<적용시기>

2001년9월3일이후투자를개시하는분부터적용

나.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에대한지원강화(조세특례제한법§11)

현 행	개 정(안)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5% 세액공제 - 다만, 1990년1월1일이후수도권내창업기업에대해서는적용배제	- 공제율을5%→10%로인상 -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허용

<개정이유>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는지식기반화를통한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투자이고 교통난 · 공해유발등부정적효과가적으므로

-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허용

<적용시기>2001년9월 3일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다.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24)

현 행	개 정(안)
○중소 제조업의 자동화 · 정보화 투자시5% 세액공제	○모든중소기업으로확대 - 컴퓨터를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포함
○중소기업이사업용자산및 POS설비투자시3% 세액공제적용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에 정보보호시스템을추가 - 수도권내정보보호시스템투자도공제허용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및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의 5%(대기업3%) 세액공제	○수도권투자에대해서도공제허용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자동화 · 정보화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지원

○해킹 ·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투자를지원

○정보화투자는 수도권집중 억제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필수적투자인점을감안

<적용시기>2001년9월3일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라. 부품·소재산업지원

(1) 부품·소재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9·10)

현 행	개 정(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손금산입한도 ·수입금액의 3%(자본재및기술집약적산업은 5%)	- 손금산입우대업종조정 ·자본재산업을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공제율 ·증가분의 50% 또는 경상분의 15% 중 선택(대기업은 증가분만 적용)	-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의 사용용도및 세액공제적용대상에추가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조립·완성품 위주의 산업으로 부품·소재산업이취약하여핵심부품을대부분수입에의존

- 부품·소재산업에대해 연구및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부품·소재산업의경쟁력을제고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이「부품·소재육성특별조치법」제정(2001.2.3)에 따라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으로개편됨.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2)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금의 소득공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16)

현 행	개 정(안)
○거주자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출자한경우소득공제허용 - 적용대상 ·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에대한직접투자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추가
- 공제율: 출자금액의30%	-15%로축소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70%	- 50%로축소

<개정이유>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되, 공제수준은 소득세율이인하되는점을감안하여축소조정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기관투자자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투자를 목적으로결성하는조합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출자하는분부터적용

(3)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자에 대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13, §14)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자 등과의형평을감안하여동일하게세제지원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출자하는분부터적용

현 행	개 정(안)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을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사용으로인정 ○거주자, 중소기업창투회사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경우양도차익비과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자에대해서도창투조합출자자등과동일하게지원

마. 기타중소기업지원강화

(1) 중소기업 IT화사업에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의2)

현 행	개 정(안)
< 신설>	○「1만개중소기업 IT화사업」에의해 중소기업이중소기업청등으로부터 ERP 또는 전자상거래 설비비용을 지원받는경우 - 지원금의 상당액을 지급받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조기 비용처리할 수있도록함.

<개정이유>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산회계시스템,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지원받는경우(기업당최고2천만원까지지원)

- 현재는 지원을 받았을 때 먼저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하고추후감가상각을통해비용으로처리토록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지원받는 당해연도에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토록함으로써「1만개중소기업 IT화사업」을세제면에서지원

<적용시기>개정법공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2) 축산업, 종자 및묘목생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등)

현 행	개 정(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건설업등16개 업종 - 감면내용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도·소매업, 의료업및자동차정비업은10% ○축산업에대한소득공제 - 공제율: 4년간소득금액의20%	○축산업, 종자및묘목생산업을 대상업종에추가 < 폐지>

<개정이유>

○수산업등과의 형평을감안, 축산업을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 30%) 대상에 추가하고 중복지원되는 축산업소득공제제도는폐지

○ BT산업 지원을 위해 종자및묘목생산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포함.

※현재도 축산업·종자및묘목생산업에대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투자세액공제 등 여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적용중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위한 세액공제제도보완(조세특례제한법 §7의2)

현 행	개 정(안)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업구매전용카드 ·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 공제율: 카드등사용액의0.5%	- 적용대상범위조정 · 기업구매전용카드 중 카드회사가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카드는제외 · 금융기관의상환청구권이없는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추가

<개정이유>

○구매기업 부도시 카드회사가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사실상 기존어음할인제도와동일하므로세제지원대상에서제외

○기업어음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2001.2)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중 금융기관이 납품중소기업에게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것은사실상상환청구권이 없는기업구매전용카드와같으므로세제지원대상에추가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사용하는분부터적용

4. 기타 기업과세제도 개선

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규제제도보완

현 행	개 정(안)
○내국법인간에는 수입배당금의 30% 또는50%를익금불산입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받는배당금은제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삭제
○자기자본 5배(2002년부터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기업> · 상장, 협회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 ·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은삭제하고시행령에서 구체적 적용범위를 정할 수있도록위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는 상호간 특수관계자로보아 - 재화 등의 저가·고가거래시 부당하게조세를감소시키는것으로보아이를부인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의한기준을삭제하고 -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새로이보완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의유가증권에 투자하는경우 - 증권거래세 및 의제취득세 면제배제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의유가증권에투자하는경우에도 - 증권거래세 및 의제 취득세 면제 허용
○농민이 축산업 주업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육하는 가축용 사료에 대해 VAT영세율적용 -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경우는제외	○농민이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도 사료에 대한VAT 영세율적용

※ 2001년8월 11일여야경제정책협의회합의사항

<개정이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현행 세제상 각종 규제제도의 타당성및존속 여부를재검토하여불필요한제도는 폐지하고

- 계속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각 제도별로 독자적인기준을정하도록개선

○법인간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는 본질적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여부에관계없이익금불산입허용

○대기업이 차입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존치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함.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시행령에서세법상거래내용을부인할 수있는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일반화하여규정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경우현행증권투자회사법상으로도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에게50%까지투자가 가능하므로 일반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세및의제취득세를면제하여구조조정을지원

○현재자영축산 농가에 대해 영세율을적용해주는 것과 형평을 감안하여 농민이 축산주업법인으로부터 수탁받아가축을사육하는경우에도영세율을적용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나.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축소(법인세법 §42등)

현 행	개 정(안)
○대손금의범위 - 상법상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 - 회사정리법 등에 의해 회수불가능으로확정된채권 - 경매가취소된압류채권	○회사정리, 화의및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재조정시 현재가치할인차금도대손금으로인정
○주식평가손익은세무회계상손익으로인정되지않으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보유하는주식등으로서그주식발행법인이부도난 경우에는손금처리가능	○파산선고등으로주식등의가치회복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의주식평가손도손금으로인정
○사업연도중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 당해사업연도중에사용기간이6월이하: 연상각범위액의1/2 - 사용기간이 6월 초과: 연상각범위액전액	○사용월수에따라상각 -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frac{\text{사용월수}}{12}$

<개정이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여 제도를 간소화하고, 세무조정에따른납세자의부담을최소화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자율인하, 기한연장등채권재조정으로현재가치가장부가액보다낮아진경우그차액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다.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소득세법 §35③, 법인세법 §25④)

현 행	개 정(안)
○사업자가지출한접대비중신용카드, 세금계산서·계산서에의한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경우 -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등의무사용비율 : 납세지또는사용지역기준 - 서울특별시: 80% 이상 - 광역시: 70% 이상 - 시: 60% 이상 - 군: 50% 이상	< 폐지>

<개정이유>

○현재건당접대비지출액이5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용시에만손비로인정됨.
- 지역별 신용카드사용의무비율제도는계산의 복잡성에 비해이중적규제로서실효성이적음.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에지출하는분부터적용

라. 가산세제도의합리적인정비

(1) 증빙불비가산세율인하(법인세법 §76⑤, 소득세법 §81)

현 행	개 정(안)
○사업자 또는 법인이 10만원 이상 재화·용역거래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수취를의무화 - 미수취시 가산세 : 거래금액의 10%	- 가산세율인하: 2%

<개정이유>

○각종 계산서 등의 미교부·불성실 가산세가 거래금액의1 2%인점을감안하여현행가산세율을하향조정

<적용시기>개정법공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2)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 폐지(법인세법 §114 등)

현 행	개 정(안)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를일간신문에공고 - 불이행시가산세부과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적은금액	< 폐지>

<개정이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정보는 인터넷·증권거래소 등에 공개되어있고세법에서규제할사항이아니므로폐지

<적용시기>
개정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합리화(법인세법시행령 §161⑤)

현 행	개 정(안)
○사업연도중주식등(상장·협회등록법인의소액주주분제외)의변동상황이있는법인은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 - 제출대상 ·명의개서여부에불구하고모든변동내역 - 가산세 ·누락분주식등의액면가액의2%	- 명의개서된분에대하여만 그내역을제출토록대상축소

<개정이유>

○주주가 소유주식 변동 상황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그 변동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가산세를부담해야하는문제점해소

<적용시기>개정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Ⅴ.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재정기조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180개 감면 중 43개 폐지, 16개축소)

○금년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 중 지원목적이달성되었거나실효성이약화된감면은폐지

○일몰시한이없거나도래하지않는감면제도의경우

- 과세형평을 크게 저해하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제도는폐지하거나감면수준을조정
- 특히,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를 감안하여 양도관련 조세감면은 대폭축소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 과세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종류별로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기반확대및과세형평성제고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감면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거나 기득권화되지 않도록 금년부터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감면 내역을 조세지출예산 내역에포함시켜공표하고

○다음 연도 감면규모의 전망액을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으로제출하는방안을조기추진

1. 폐지되는 감면제도

현 행	폐지이유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제도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자의신고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의 120%를초과하는경우 - 초과금액의 30%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용카드사용에따른소득세감면제도와 중복되고 소득세율이 인하되는점을감안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 전환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 감면율 : 6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제지원은 연구개발 등 기업경쟁력 제고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소득 발생 후에는 정상과세가바람직 ※폐지시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적용가능

현 행	폐지이유
○기숙사운영사업에대한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50% 감면 - 부가가치세면제	○이용실적미미하고실효성이적음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제도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대해서는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허용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90% 이상을배당시동 배당금액은 소득공제받게 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준비금 제도는실효성이없음.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등 출자에 대한과세특례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대해법인세비과세	○초기벤처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 목적달성 ※ 1997년 이후 2000년까지 창투조합수및조합투자금액이3 4배이상증가 ※벤처조합및개인에대해서는계속 지원

2. 과다한 감면 축소 및 감면관리 강화

가.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감면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현 행	개 정(안)
○고도기술과산업지원서비스에대한 외국인투자의경우 -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대하여도감면허용 · 법인세·소득세:100%(7년), 50%(3년) · 배당소득:100%(7년), 50%(3년) · 지방세:100%(5년), 50%(3년)	- 감면기간및감면율축소 · 법인세·소득세:50%(3년), 30% (2년) · 배당소득: 50%(3년), 30%(2년) · 지방세: 50%(3년), 30%(2년)

<개정이유>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 없이 가동중인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사업양수방식의외국인투자는
-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기간 및감면율을1/2 수준으로축소

※외국의 경우 사업양수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조세지원하는사례가없음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나. 수도권 법인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보완 (조세특례제한법63의2)

현 행	개 정(안)
○수도권소재법인공장·본사가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11년간법인세등감면 ※6년간100%, 5년간50% - 대상법인: 모든업종의법인 - 적용시한 ·2002년말까지이전	- 부동산매매업·임대업과소비성서비스업을영위하는법인은제외

<개정이유>

○부동산매매업·임대업및숙박업(관광호텔업제외)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그 속성상 지방이전의 효과를 기대하기어려우면서세금회피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큼.

<적용시기>

2002년 1월 1일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분부터적용

다. 각종비과세저축의효율적관리

현 행	개 정(안)
○각종비과세저축의관리 - 비과세상품별로1인1통장제한	○모든비과세저축을인별로전산화하여가입한도를통합관리 ⇒비과세저축의가입한도내에서어느금융기관에나자유롭게저축가능

<개정이유>

○현재 대부분의 비과세저축을 1인당 1통장으로 제한함에 따라 비과세저축의 중복가입이나 한도초과 등에 따른감면세액의추징 등으로 인한민원발생이 빈번하고 세금탈루가많음.

○앞으로는전금융기관통합한도제로전환
- 모든 금융기관의비과세저축자료를인별로전산화하여 비과세저축계좌 개설시 한도를 실시간(real time)으로 관리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비과세저축을이용한세금탈루소지도해소

<적용시기>2002년1월1일부터 통합관리

라.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106의2)

□현재 농·어업용기계 및시설용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교통세·특소세·교육세및지방주행세면제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기계 338만대, 어선 9만척, 양식가구 58천가구

□ 1996년 이후 최근 5년간 면세유 평균소비증가율이 12.8%로 동 기간 국내 석유류 평균소비증가율 6.8%보다매우높음.

○동기간중농기계평균증가율(2.7%), 농·어업 평균성장율(2.9%)을 감안하더라도 면세유 소비증가율이 너무높음.

※감면세액은 1996년 2,900억원에서 2000년 약 1조원으로 3.4배증가

□면세유류와 일반유류간 큰 가격차로 면세유의 부정유출문제심각

○ 2001년 7월1일 가격기준으로 l당면세로 인한 가격차는휘발유 861원, 경유 294원이나

○에너지 세율이 연차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2006년 7월 이후에는 경유의 l당 가격차가 677원으로 확대되어 부정유출이더욱 심해질것으로예상됨.

(사례) ·선외기어선(200마력기준, 가격 1,600만원, 휘발유사용) : 연간 3,460만원세금혜택
·농업용 난방기(18만kcal, 가격 500만원, 경유사용) : 세금혜택이 현재 최고 756만원에서 2006년7월이후 1,848만원까지확대

□따라서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고 농·어업용으로만사용될수있도록면세유지원제도의보완이절실

(1) 면세유실사용량확인절차도입

현 행	개 정(안)
○농기계, 어선등 - 농림부, 해양부장관이고시한기종별한도량을작업시간, 운항거리에 관계없이일률적으로적용	○유류소모량이많은어선과트렉터, 콤바인등신규로생산하는대형농기계에한정하여 - 실제유류사용량을확인할수있는 ‘ 자동계측기 ’부착의무화 ※구체적인기종및시기는시행령에서규정: 트렉터, 콤바인은이미계측기가부착되어있고, 어선의부착비용은약10만원으로예상
○농업용난방기, 어류양식시설등 - 생산량에 관계없이 한도량을 일률적으로 공급	○대규모로 면세유를 구입하는 소수농어가에대해서는생산실적등을 기준으로면세유공급 ※구체적인시설및시기는시행령에서규정

<개정이유>

○농기계, 어선, 양식시설 등에 대해 작업시간, 운행거리 등 실적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토록 하여 실제 경작 농어민에 대한 혜택은 계속 유지하면서 공급체계의 투명성을높여농 · 어업용 이외로유출하는부정사용억제

(2) 면세유부정사용자에대한제재강화

현 행	개 정(안)
<신 설>	○면세유류 부정사용자에 대한 감면세액및가산세추징 - 감면세액등추징대상 · 면세유구입권양도자 · 면세유 구입 후 타용도에 사용한 자및제3자에게양도한자 - 가산세율: 감면세액의20% ○부정사용자에 대한 일정기간(예2년) 면세유공급중단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사용자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일정기간의 면세유공급중단등의제재신설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공급받는분부터적용

(3) 농 · 수협의면세유관리책임강화및관리수수료지급

현 행	개 정(안)
<신 설>	○농 · 수협의면세유관리 소홀, 구입권발급시본인확인소홀등농 · 수협의귀책사유로인한면세유부정유출시관리불성실가산세부과 - 부정유출된 면세유 감면 세액의 20% ○농협등이면세유구입권판매시수수료(면세유공급가액의 일정률)를 징수하여 면세유 관리비용을 충당할수있도록함.

<개정이유>

○농 · 수협의 면세유 관리 및 면세유 구입권 발급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관리비용에충당할수있도록함.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발급하는면세유구입권부터적용

3. 양도세관련 감면제도의 정비

가. 법인특별부가세가폐지되므로특별부가세관련감면폐지

○금융 · 기업구조조정관련감면
- **중소기업간통합시이월과세(§1)**
- **금융기관 합병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50%감면(§0) 등**

○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감면
- **대도시내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과세이연(§0) 등**

○공익사업지원을위한감면제도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부동산 양도시 50% 감면(§8) 등**

나. 개인양도소득세감면폐지또는축소

□양도소득세율 인하효과를 감안하여 현행 25% 감면제도폐지

○공공목적을 위한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25%감면(§7)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존치하되 10%로축소(현행 35%)

○산림지를국가등에게양도시25% 감면(§9)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사업시행자에게양도시25% 감면(§9)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 양도시 25% 감면(§0)

□주로법인에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목적으로한지원제도 등 개인은 감면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는제도폐지

○중소사업자가 유통단지 등으로 사업장 이전시 50% 감면(§5)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 위해 양도시 75% 감면(§6)

○합병등의과정에서발생한중복자산등을양도시 50% 감면(§2)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50% 감면(§6의2)

○개발사업시행자가조성한부동산양도시50% 감면(§8)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 취득시 50% 감면, 부동산취득시과세이연(§3)

○대도시내공장을 지방으로이전하기위하여부동산양도대금으로기계장치취득시50% 감면, 부동산취득시과세이연(§0)

○ 10년이상경영한목장을이전하기위하여부동산양도

대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50% 감면, 부동산 취득시과세이연(§70)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기계장치취득시 50%감면, 부동산취득시과세이연(§71)

□신설된제도로대체가능한감면폐지

○ 1999.8. 2001.12.중 신축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양도시면제(§97의2)

○ 2000.1. 2001.12.중 신축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10% 적용(§99의2)

⇒신축주택을 2001.5. 2003.6.중취득하는경우향후5년간발생하는양도차익을면세하는제도(§99의3)로대체

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69)

현 행	개 정(안)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등에편입된경우 ·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편입후 3년이내에양도하면 · 양도차익전부에대해양도소득세 면제 - 감면한도: 3억원	- 편입시점까지발생한양도차익에한해면제(주거지역등에편입된이후 발생한개발이익은과세) - 1억원으로축소

<개정이유>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의 농지는사실상대지화된것으로더이상농지로보기어려움.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여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정상과세되는것과형평고려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감면한도(3억원)를 일반 양도소득세감면한도(1억원)와일치시켜축소

※세액을 3억원 감면 받으려면 농지양도가액이 통상 1520억원, 농지면적이1,000 6,000평에달함.

<적용시기>

○면제범위: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분부터적용

○감면한도: 2002년1월1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간접세 감면 정비

가. 국내외역차별을발생시키는감면제도정비

(1)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106②)

현 행	개 정(안)
○국내제작이곤란한도시철도 · 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수입물품에대해부가가치세면제 - 지질안정제등123종,역무자동화설비기기 등 80종, 도상자갈세척기 등 149종	<폐지>
○한국교육방송공사용수입시설등에 대한VAT면제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용하기 위해수입하는시설및방송기자재	<폐지>

<개정이유>

○국내제작가능여부에따라부가가치세과세·면세를구별하는것은대물세인부가가치세의과세원칙에맞지아니함.
- 생산요소의 이동이자유로운개방경제체제하에서 내·외산을과세상차별할이유가없음.
- 부가가치세를시행하고있는외국에도사례가없으며수입물품을가격상우대함에따라국내기술개발을저해

○교육방송용기자재의경우 국내산은 과세, 수입산은 면세됨에따른내·외국산역차별시정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수입하는분부터적용

(2)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폐지(조세특례제한법 §109)

현 행	개 정(안)
○국내제작곤란수입물품에대한특별소비세면제 - 특정연구기관이사용하는물품 - 한국방송공사의 난시청 및 해외방송강화용시설등 - 방위산업용기자재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시험·연구용견본품 - 한국교육방송공사용물품등	< 폐지>

<개정이유>

○ 1999년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대폭 축소되어 영사기, 촬영기,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이 거의 없어 감면제도를 존치시킬 실효성이없음.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수입하는분부터적용

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

현 행	개 정(안)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예: 식품제조업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가액의 일정률을납부할부가가치세에서공제 - 공제율: 3/103(음식업5/105)	○의제매입세액공제율축소 - 2/102(음식업3/103)

<개정이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생산시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율만큼 공제하는 것이원칙이나
- 현행 공제율이 정해진 1997년 이후 배합사료, 선외내연기관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확대되었고
- 최근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수입농산물의 비중이 확대되어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실제 VAT부담률보다현행공제율이너무높음.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공급받는분부터적용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VAT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②)

현 행	개 정(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등이 개인·면세사업자 등세금계산서를교부할수없는자로부터 중고자동차·고철 등을 구입하는 경우 폐자원 취득가액의 10/110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공제대상: 중고자동차, 고철, 폐지, 폐합성수지등12종	○매입세액공제율축소 - 공제율: 10/110 →5/105 - 공제대상에서중고자동차는제외

<개정이유>

○당초폐지, 고철 등의 수집업자에게폐자원 매입가액의 10%를납부할부가가치세에서공제해주는취지는

- 폐자원 수집업자가 폐자원 매입시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이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폐자원의 원활한 수집을 촉진하기위한것임.

○그러나, 무상으로 수집한 폐지, 폐유리 등을 유상으로 구입한것처럼영수증을위조하여허위공제를받거나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고철, 폐지 등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부당공제받는사례가많음.

○중고자동차는 고철 등과는 달리 원시 수집과정이 필요없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세제 지원 대상에서제외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취득하는분부터적용

라. 상업방송수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현 행	개 정(안)
○지상파 방송(2001년 과세 전환), 음악유선방송은과세 -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면제 ·단, 광고는과세	- 과세전환

<개정이유>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등과의과세형평유지

- 다만, 면세사업 당시 취득한 시설자재 등의 불공제한 매입세액은공제허용

○외국의경우도모두상업방송에대해과세

※ EU지침: 공공기관이공급하는공공방송에한해면세

<적용시기>

2002년7월1일이후최초로공급하는분부터적용

마. 관세경감물품의폐지(조세특례제한법 §18)

<개정이유>

○부품의생산자립도가97% 수준(대형농기계: 80%)으

로 더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농업용기계부분품과 이용실적이 미미한 태양열이용기기 및 행사가 종료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ASEM 관련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폐지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수입하는분부터적용

현 행	개 정(안)
○관세경감물품 - 농업기계제조용부분품 -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기자재 - 동계아시아경기대회관련물품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관련물품	< 폐지>

5. 유형별포괄주의소득세과세방식도입(소득세법 §17등)

현 행	개 정(안)
○종합소득세과세방식 - 8개유형의소득을구분하여각소득별로열거된소득만과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일시재산, 기타소득	-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에대하여는법령에열거되지아니한경우에도유사한소득은동일하게과세할수있는유형별포괄과세주의도입

<개정이유>

○유사한소득은동일하게과세하도록함으로써과세기반확대및과세형평성제고

※유형별 포괄주의로 전환시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사례(이자·배당소득의 경우) : 상업어음 할인액, 신종펀드(예: 문화펀드)의배당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VI.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세제보완 및 납세편의 제고

1. 인지세제의 개편

□인지세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유통력이 부여되는재산권관련문서에과세되는세금이나

○ 1991년 이후 개정하지 않아 일부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등이 경제현실에맞지아니함.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고, 중산·서민층을지원하기위하여과세대상을대폭축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개인간에작성하는문서와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잡한세율체계를단순화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계약서, 금융기관의 소액대출문서에대한비과세한도확대

□그동안의경제여건 변화와 소득수준향상에따라일부 신종 금융상품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

가. 인지세과세대상문서의대폭축소(인지세법 §)

현 행	세액	개 정(안)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등단체설립문서	3만원	< 폐지>
○대리점및특약점계약서	3천원	
○영업의양도에관한증서, 용선계약서(항공기포함)	누진과세 (1~35만원)	
○임치에관한증서	100원	
○상호보험회사기금증권	200원	
○상호신용부금·계금증서	100원	
○연불판매계약서	1만원	
○도급에관한증서	누진과세 (1~35만원)	○개인간에작성하는도급문서는과세제외 - 법률에 의해 작성이 의무화되어있는도급문서로한정
○소비대차에관한증서	누진과세 (1~35만원)	○개인간의 소비대차 문서는 과세제외 - 은행, 보험회사 등금융기관과의 ' 금전소비대차에관한증서로한정

<개정이유>

○개인간에작성하는 문서, 과세실효성이낮은문서를 과세대상에서 대폭 제외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거래비용경감

- 현행 19종 40개의 과세문서 중에서 3종 16개 문서를 과세대상에서제외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작성하는문서분부터적용

나. 중산·서민층지원을 위한 비과세 한도 확대(인지세법 §)

현 행	개 정(안)
○500만원이하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는비과세	○주택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거래금액1억원이하비과세
○상업용부동산전세권및임대차에관한증서에대해1만원과세	○임대차에관한증서는비과세
○금융기관소비대차문서 - 과세최저한: 5백만원	- 과세최저한: 2천만원으로상향조정

<개정이유>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로 중산·서민층의부담경감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거래 : 총 주택거래건수의 87% 차지

※금융기관의 2000만원 이하 대출 : 전체 대출건수의 73% 차지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작성하는문서분부터적용

다. 세율체계단순화및과세최저한인상(인지세법 §)

현 행	개 정(안)
○다음 과세문서에 대해 8단계의 누진세율적용 - 과세대상: 부동산소유권이전, 금전 소비대차문서, 용선계약서, 도급계약서	
- 누진세율체계: 8단계	- 5단계로단순화
<500만원이하: 비과세> · 500만원 1천만원 : 1만원 · 1천만원 2천만원 : 2만원 · 2천만원 3천만원 : 3만원 · 3천만원 5천만원 : 4만원 · 5천만원 1억원 : 7만원 · 1억원 5억원 : 15만원 · 5억원 10억원 : 2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1천만원이하: 비과세> · 1천만원 3천만원: 2만원 · 3천만원 5천만원: 4만원 · 5천만원 1억원 : 7만원 · 1억원 10억원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개정이유>

○세율구간을 현행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비과세되는 거래금액 한도도 상향조정(500만원→1천만원)하여세제의단순화도모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작성하는문서분부터적용

라. 과세대상문서의추가및세율조정(인지세법 8)

현 행	개 정(안)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등 - 세액: 200원	○기업어음, 주식선물거래 약정서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세액을 상향조정 - 400원
○상품권: 200원	○400원
○골프장 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5천원	○1만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300원	○1,000원
<신설>	○전화가입(이동통신가입포함)신청서: 1,000원

<개정이유>

○「기업어음등 신종금융상품」: 신종금융상품인 기업어음 등은 기존 금융상품과 형평차원에서 신규과세하고 세액은 1991년이후물가상승등을감안하여인상

○「상품권」: 현금 대신 선물용으로 활용되는 점, 고액상품권발행이급증하는점을고려하여세액인상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골프 및 콘도회원권은 고가이고 콘도회원권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개념이 크므로세액인상

○「신용카드가입신청서」: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대출은 인지세가 면세되는 대신 금전소비대차문서는 누진과세되는점을감안

○「전화가입신청서」: 국가·공공기관에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 사용을 가능케 하는 자산 취득에 관한 문서이므로신규과세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작성하는문서분부터적용

마. 납세자권익보호를위한제도개선(신설)

현 행	개 정(안)
○예·적금통장, 상품권등의경우에는인지를첨부하는대신사전에현금으로인지세납부가능	○후납제도도입 - 국세청장의허가를받은문서에대해문서작성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현금납부허용
○인지세미납부·과소납부시가산세 규정없음	○가산세신설 - 무납부·과소납부세액의3배

<개정이유>

○문서작성 전에 현금으로 인지세를 선납하였으나 추후 사정 변경으로 해당문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납한 인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문서를 일일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후납제도를 도입하여납세편의도모

○인지세의성실납부를유도하기위해가산세제도신설
- 가산세율은 인지세액 규모가 적고 탈세가 용이한 점과 외국의예를감안하여3배로중과세하여실효성확보

※외국의가산세율
· 영국8배, 홍콩 10배, 대만 5~15배, 일본3배, 싱가포르4배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작성하는문서분부터적용

2. 과세제도의 합리화

가.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한시적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106의2)

현 행	개 정(안)
○유흥업소(룸싸롱, 나이트클럽, 카바레등)에대해특소세20% 과세	○2년간(2002~2003년) 한시적으로특소세비과세

<개정이유>

○현재 유흥업소는 높은 세부담(특소세 · 교육세 등 포함시 38.6%)으로 카드깡, 위장가맹점 매출 등 불법 · 탈세행위를조장하는문제가있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의 정착과유흥업소의과표양성화를유도하고
- 유사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카페 '등과의 불형평 문제 해소

※특소세과세대상 : 5,500개(룸싸롱3,372개, 나이트클럽 886개, 카바레314개, 디스코클럽85개)

<적용시기>2002년1월1일부터적용

나.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소득(10% 과세)에대한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89)

현 행	개 정(안)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소득 - 10% 과세후종합과세대상이되는때에는종합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소득은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

<개정이유>

○중산 ·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저율로 분리과세함으로써지원제도의실효성을제고
- 저축상품을 특정하여 저세율로 세금우대를 하면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세금우대하는 부분까지 종합과세하는 것은불합리

○금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인별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세금탈루소지 없음

<적용시기>2001년1월1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다. 사립학교 장학금 등 기부금 공제 개선(조세특례제한법 §73)

현 행	개 정(안)
○사업자가 지출하는 다음의 기부금은소득금액의50% 범위내에서소득공제 - 문예진흥기금,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출하는금액 - 독립기념관에지출하는기부금 -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지출하는기부금등	○비사업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의50% 범위내에서소득공제허용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 시설비 · 교육비 · 연구비 : 종합소득에서전액소득공제 - 장학금: 종합소득의10% 범위내에서소득공제	- 사립학교에지출하는장학금에대하여도종합소득에서전액소득공제

<개정이유>

○근로자 등 비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달리적용되는불합리를해소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기부하는분부터적용

3. 납세편의 제고

가. 부동산양도시등기전사전신고제폐지(소득세법 §65)

현 행	개 정(안)
○부동산양도신고제 - 매매등의사유로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 · 등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등기소에제출 - 부동산양도신고시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적용	< 폐지>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고 부동산 등기 전산화로 과세자료의 적기수집이 가능해짐에따라
-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를 폐지하여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불편해소

※부동산 양도신고제를 폐지하더라도 양도후 2개월 이내에예정신고를하면 10%의세액공제가능

○대법원 등기전산화 및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 프로그램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02년 7월1일부터폐지

<적용시기>2002년7월1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나. 원천징수납세지조정(소득세법 §8)

현 행	개 정(안)
○사업장 단위의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있는법인의원천징수세액납세지 - 원칙: 사업장소재지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근로·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을본점에서일괄납부가능	- 본점일괄징수·납부세액에사업소득, 기타소득도포함

<개정이유>

○본점에서 전산으로 일괄처리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행정의효율성도제고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다. 중간예납세액소액부징수금액인상(소득세법 §86)

현 행	개 정(안)
○중간예납세액의소액부징수금액 - 10만원이하	- 20만원으로상향조정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와 소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징수에 따른행정비용절감

※ 10 20만원사이의중간예납고지

- 총중간예납건수의24.6%, 총중간예납세액의2.4%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재정3법 제 · 개정 추진현황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정책과에서 2001년8월 27일에발표한「재정3법제 · 개정추진현황」의전문입니다.

Ⅰ. 주요내용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재정관련 3개법(재정건전화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법)의제정및개정을의원입법으로추진중

□이를 위해 국회에 여 · 야의원 9인으로 「재정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2000년 12월 15일 여야원내총무합의)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2001년1월5일)
민주당: 강현욱, 김기재, 김택기, 이종걸의원
한나라당: 신영국, 김용균, 이주영, 이한구의원
자민련: 원철희의원

□그동안 총 1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안별 주요내용을 협의하였으나, 일괄합의에는 이르지 못한상황

Ⅱ. 재정건전화특별법

【주요 합의사항】

(1)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구성 · 운영

○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위 원 : 재정경제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안건관련 부처 차관, 위원장이위촉하는전문가(국회의장이추천하는3인포함)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기능
<심의사항> : 중기재정계획, 채무보증관리계획, 기타 국가 · 지자체의재정건전화를위해필요한사항
<보고사항>
- 정부투자기관재정운영계획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 지방재정건전화계획등

(2) 중기재정계획의수립및국회보고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수립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

(3) 세계잉여금의사용제한및사용시기

○세계잉여금의사용제한
• 이월액과 추경재원을 제외하고는 국가채무 상환 및 교부세정산에만사용

○세계잉여금의사용시기
• 국가채무의상환은 대통령승인후에사용가능
• 교부세정산은국회결산이후사용가능

(4) 추경예산편성요건의강화

○대규모자연재해가발생한경우

○심각한경기침체, 대량실업의발생등
대내외여건의급격한변화로재정지출이필요한경우

○법률에 의한 지출이 예산성립 후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5) 재정부담이증가하는법률의제·개정제한

○향후 5년간의 재정지출·수입의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재원조달방안을첨부하여국회에제출

○상임위심사전에예결위의견을구하도록함.

○새로운 국세감면 요청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폐지 방안제출

(6) 채무보증관리계획수립

○정부 채무보증에 관한 관리계획을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

(7) 국가채권·채무백서의발간으로재정정보공표

○국가채권·채무현황과그변동내역

○정부투자기관및지방공기업의채무현황등

【미합의 쟁점사항】

(1) 국가채무의정의조항을규정할지여부

(2) 특별교부세·양여금집행결과를국회에통보할지여부

III. 기금관리기본법

【주요 합의사항】

(1) 기금운용계획및결산에대한국회의통제권강화

○기금운용계획 · 결산의국회제출(소관상임위보고) 및 국회심의 · 의결→기금에대한재정규율강화

○기금운용부처의자율적 운용계획변경범위축소
• 주요항목지출금액의50% →30%

(2) 기금의구분폐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을「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기존의 기타기금에대한관리 · 감독강화

(3) 기금폐지및통폐합

○존치필요성 · 목적달성도등을감안일부기금폐지(7개)
• 우체국보험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기금,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국제교류기금, 법률구조기금, 염안정기금, 국민투자기금

○유사중복되는기금통폐합(6개→3개)
•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참전기념사업기금, 보훈기금→보훈기금
•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미합의 쟁점사항】

(1) 기금의주식투자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는조항의 삭제여부

IV. 예산회계법

【주요 합의사항】

(1) 예산안요구지침의국회예결위보고: 매년4월중

(2) 성과중심의재정운영

○기획예산처장관은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작성지침시달

(3) 통합재정의관리범위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금을 포함한통합적 재정정보를 국민에게제공

(4) 계속비사업의범위확대

○민자사업을계속비사업에포함

(5) 총액계상예산사업의축소 조정

○일반회계와특별회계순계규모의4% 이내로제한

(6) 예산안국회제출시기

○현행대로회계연도 90일전까지로함.

(7) 추가경정예산의선집행금지와사전배정금지

○추경예산 확정 전에 추경예산에 포함될 새로운 항목의

경비를배정하거나집행할수없음

(8) 예산집행지침 · 수시배정 · 예산자문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9)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예비금사용명세서제출

(10) 사고이월의재이월금지명문화

(11) 총사업비관리강화

○총사업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변경시소관상임위와예결위보고

(12) 기술료에대한사후관리강화

○기술료는기획예산처장관과의협의를거쳐사용

(13) 주요사업의예산성과보고서를작성, 국회에제출

(14) 위법부당사항의시정및제도개선요구

○기획예산처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시정요구가능

(15) 시민감시제도도입

○누구든지 예산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시정요구가능

(16)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설치 · 운영

○정부회계제도운용에관하여재경부장관을자문

【미합의 쟁점사항】

(1) 법 적용 범위에 기금 · 지방재정 · 정부투자기관 포함 여부

(2)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결산 관련 서류의 국회제출시기를앞당기는문제

(3) 복식부기근거규정의강제성여부

(4) 현물출자 · 전대차관 · 국채 · 국유재산매각의예산포함여부

(5) 전자이체시국고수표발행생략여부

(6) 분기별예산집행상황의국회보고여부등

전자정부 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개시

※이자료는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2001년9월8일에발표한「전자정부서비스내년부터본격개시」의전문입니다.

주요내용

□安文錫 전자정부특별위원장(고려대 교수)이 9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각 부처가 추진중인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내년부터 대민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개선될것이라고밝혔음.

□먼저, 행정자치부가추진중인단일창구를통한전자 민원혁신사업(G4C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개시하여,

○1월부터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지않아도되고,
※정부기관간주민등록확인시스템구축

○3월이 되면 매년 백만건 이상씩 발급되는 국세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도 대부분의 정부기관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며,

○ 11월이 되면약 400여종민원업무의전자적처리가 가능하게됨.

□지금까지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전산망 연계시스템이 내년 7월말까지 구축되어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가입 및 급여내역 조회 등 관련 서비스가 단일창구를통해 One-stop으로제공될계획임.

□현재국세청이추진중인Home Tax Service가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어 11월에는 세금의 신고, 고지, 납부, 세무상담등을모두인터넷으로통해안방에서처리할수있게됨.

□재경부가 추진중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물품 대금이 채권자 계좌로 실시간전자이체되어현행국고수표는단계적으로축소

□전자입찰이용도 그 규모가 매월 급증하여 1 3월에는 월평균 10건(금액 9.7억원)에불과하였으나, 4 8월에는월평균 262건(금액 428억원)으로대폭증가되고, 9월부터는全지자체까지확산될예정임.

○또한, 내년8월까지구매신청에서대금납부까지의조달과정이 온라인화되면 기업와 정부간의 전자상거래가 더욱활성화될전망

□정부가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있는 주요전자정부 사업의세부내용은아래과같음.

주요 전자정부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1. 단일창구를통한민원서비스혁신(G4C)

○ 2002년1월부터
- 모든 민원사무(4,000여종) 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전자정부통합웹사이트를통해제공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50종의민원서류의 온라인 신청 가능
(예) 토지대장등본교부신청, 등록세감면확인신청등
- 각기관이이용할수있는주민등록확인시스템구축
⇒동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제출요구폐지(2002년1월부터)

○ 2002년3월부터
- 국세완납 · 사업자등록정보를 수요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 → 민원인이 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불편해소
- 온라인민원서비스를 200여종으로확대
• 호적부등초본, 지방세 납부증명 등을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정부기관에는 온라인 송부, 본인에게는 온라인교부가가능토록함.

○ 2002년 11월부터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국가 주요 DB 정보공동활용시스템구축
▶구비서류폐지및기관방문최소화로국민편의제고
-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을 통해 one-stop, non-stop 서비스실시

2.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내년 7월부터 인터넷 전자민원 단일창구를 통해 보험가입내역, 보험료 고지 및 납입내역, 급여내역을 국민들이직접확인가능토록추진

○가입자변동사항신고등4대보험기관간공통 · 유사업무의통합처리로one-stop, non-stop 민원처리

○과세자료, 행자부 주민관련 정보 등 유관기관의 필요정보를 한 곳에서 받아 공통 DB를 구축하고 4개 공단에서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 기관의 정보관리및운영효율화

3.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 구축

○단계적으로서비스를확대하여, 2002년10월부터전체서비스가실시되도록추진
- 2002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원천세를인터넷을통해신고접수
- 2002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의 인터넷 고지, 납부도 가능
- 2002년11월부터

• 소득세,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에 대해 전자고지 · 납부실시
• 모든 국세관련 민원증명에 대한 인터넷 조회 서비스 제공
• 민원접수처리, 상담, 의견수렴등을인터넷으로처리

4.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2002년 6월까지 전자고지 · 납부 및 전자이체시스템 구축
- 2002년 하반기부터각종 세금 및 범칙금 등을 전자 납부하고, 공사 · 물품대금을 채권자 계좌로 실시간 전자이체
- 현행국고수표는단계적으로축소

○예산집행, 회계, 결산 등 재정관련 업무를 수작업 없이 정보시스템으로처리하는체제를 2002년까지구현

5. 전자서명 확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전자서명 이용자를 1,000만명으로 확대
- 전자민원, 전자조달, 전자상거래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전자정부서비스기반조성

6. 전자조달 확산

○구매에서 대금납부까지 조달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2002년 8월까지 구축하여 인터넷단일창구를통한서비스실시
- 단일창구를통해기관별조달관련정보를일괄제공하고1회업체등록으로전공공기관의조달에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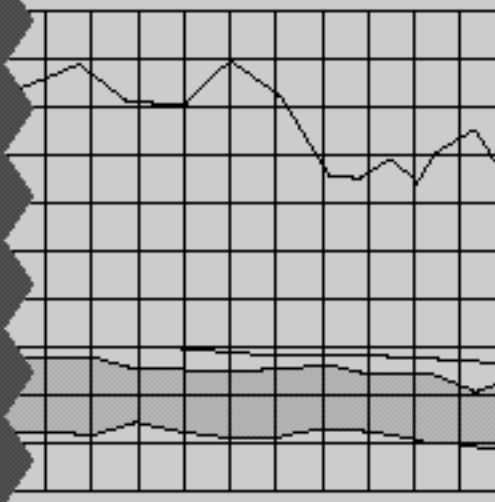
○전 공공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을 권장(2001년 4월 이후)한 이후, 공공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실적 대폭증가

	1 3월(월평균)	4 8월(월평균)
이용기관	4개	37개 (9배)
집행실적	10건	262건 (26배)
참여업체	616개	49,761개 (81배)
계약금액	9.77억원	428.5억원(44배)

※ 2001년 9월부터 전지자체가 공동이용을 시작하여, 보다 급속히확산될전망



재정통계



- 특별소비세 편

- 주세 편
  1. 주세율의 변천
  2. 주세 예산 및 징수
  3. 주류별 주세 부과
  4. 주요 주류 출고 현황
  5. 주류 제조면허장 수
  6. 주류 판매면허장 수
  7. 주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 상속세 편

1. 주세율의 변천

	1949. 10. 21(圓/石)	1950. 4. 28	1954. 3. 31(圓/石)	1954. 10. 1	1957. 1. 1	1961. 1. 1	1962.1.1
주 정	40,000	40,000	40,000	5,085	10,200	23,000	23,000
탁 주	800	1,200	400	400	400	400	3,000
약 주	5,000	12,000	6,100	2,500	5,000	7,500	30,000
명 약 주							
청 주				11,000	8,800	21,000	32,200
특 급					17,000	31,000	108,000
1 급	30,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2 급	2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합성 청주				5,600	12,500	12,500	26,500
1 급	2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 급	18,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맥 주	20,000	25,000	15,500	15,500	18,000	32,500	97,500
합성 맥주				5,500	8,500	20,000	60,000
과 실 주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5,500	5,500
증류식소주	11,000	18,000	3,300	1,500	3,000	9,300	23,250
희석식소주							6,400
위 스 키							
브 랜 디							
고 량 주	25,000	30,000	14,400	8,100	9,450	25,000	62,500
기타증류주	13,350	40,000	13,350	3,200	13,350	16,000	13,350
기타잡종주	18,000	18,000	4,500	2,100	2,100	12,500	23,900
기재주 1							
기재주 2							
인 삼 주							
인삼주 1							
인삼주 2							
기타양조주	15,000	15,000	5,400	3,600	8,100	18,000	54,000

1. 주세율의 변천(계속)

	1962. 8. 18(원/石)	1966. 1. 1(원/㎘)	1968. 1. 1(원/㎘)	1972. 1. 1	1973. 2. 26	1974. 1. 14	1975. 1. 1
주 정	2,300	49,350	49,350	49,350	49,350	49,350	49,350
탁 주	240	1,470	1,470	10%	10%	10%	10%
약 주	3,000	19,960	20,000	60%	60%	60%	60%
명 약 주					80%	100%	100%
청 주	3,220	58,520	80%	100%	100%	120%	120%
특 급	8,640	62,700					
1 급	3,500	35,000					
2 급	2,500	25,000					
합성 청주	2,650	20,570	60%	65%	65%	65%	65%
1 급	2,500	25,000					
2 급	2,000	20,000					
맥 주	7,800	77,830	100%	120%	120%	150%	150%
합성 맥주	6,000	59,870	90%	100%	100%	100%	100%
과 실 주	550	3,660	20%	25%	25%	25%	25%
증류식소주	2,325	18,040	30%	35%	35%	35%	35%
희석식소주	640	4,970	30%	35%	35%	35%	35%
위 스 키		22,000	150%	160%	160%	250%	200%
브 랜 디				100%	100%	160%	150%
고 량 주	6,250	54,970	90%	110%	110%	110%	110%
기타증류주	5,750	13,350	40%	50%	80%	80%	80%
기타재제주	2,390	15,500					
기재주 1			30%	35%	35%	35%	100%
기재주 2			40%	50%	50%	50%	40%
인 삼 주							
인삼주 1							100%
인삼주 2							50%
기타양조주	5,400	44,900	90%	110%	110%	110%	110%

1. 주세율의 변천(계속)

	1991. 7. 1	1994. 1. 1	1996. 1. 1	1997. 1. 1	2000. 1. 1
1. 주정(원/㎘)	57,000(95°)	57,000(95°)	57,000(95°)	57,000(95°)	57,000(95°)
2. 탁 주	5%	5%	5%	5%	5%
3. 약 주 류					
약 주	30%	30%	30%	30%	30%
청 주	70%	70%	70%	70%	70%
4. 맥 주	150%	150%	150%	130%	115% (2001.1.1 이후는 100%)
5. 과 실 주	30%	30%	30%	30%	30%
6. 소 주 류					
증류식소주	50%	50%	50%	50%	72%
희석식소주	35%	35%	35%	35%	72%
혼합식소주	35,40,45,50% (혼합률기준)	35,40,45,50% (혼합률기준)	35,40,45,50% (혼합률기준)	35,40,45,50% (혼합률기준)	-
7. 위스키류	150%	120%	100%	100%	72%
8. 브랜디류	150%	120%	100%	100%	72%
9. 일반증류주					
위스키원액불포함	80%	80%	80%	80%	72%
위스키원액포함	80%	100%	100%	100%	72%
10. 리큐르	50%	50%	50%	50%	72%
11. 기타주					72%
알콜25°이상	80%	80%	80%	80%	(단, 발효숙성 주류로서
알콜25°미만	50%	70%	70%	70%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위스키20% 이상함유		120%	100%	100%	과실주 이외는 30%, 불
요리전용주		10%	10%	10%	휘발분 30도이상 10%)

주: 1. 1954년에는제1차통화개혁으로인해매 ' 1석당圓 단위였던것이매 ' 1석당圜 단위로바뀜.
2. 1962년8월 18일부터제2차통화개혁으로인해' 환/석 단위가 ' 원/석 ' 단위로바뀜.
3. 1966년부터는' 원/석 단위가 ' 원/㎘ 단위로바뀜.
4. 1968년에주정, 탁주, 약주등을제외한나머지주류에대한과세가종량세제에서종가세제로바뀜에따라세율단위도 ' 원/㎘ '단위에서 ' % 로바뀜.
5. 인삼주1과기타재제주1, 그리고인삼주2와기타재제주2는각각주세율이80% 이상또는미만주류를원료로사용한것임.
6. 석 = 144㎏(1.8가마)임.
7. 방위세
1975. 7. 16 제정: 주세액의10%(단, 탁주, 주정제외, 주세율100% 이상주류는20%).
1979. 12. 28 개정: 주세액의10%(단, 탁주, 주정제외, 주세율100% 이상주류는30%).
1981. 12. 31 개정: 주세액의10%(단, 탁주, 주정제외, 주세율100% 이상주류또는이를원료로사용한주류는30%).
1990. 12. 31 폐지.
8. 교육세
1981. 12. 5 제정: 주세액의10%(단, 탁주, 약주,소주는제외).
1990. 12. 31 개정: 주세액의10%(단, 탁주, 약주,소주, 주정은제외, 주세율80% 이상주류는30%).
1993. 12. 31 개정: 주세액의10%(단, 탁주, 약주, 주정은제외하되소주의경우는1995. 1. 1부터시행, 주세율80% 이상주류는30%).
1995. 12. 29 개정: 주세율80% 이상주류는30%, 주세율80% 미만의주류는10%(단, 주정, 탁주, 약주는과세제외)
1999. 12. 28 개정: 주세율70% 초과주류는30%, 주세율70% 이하의주류는10%(단, 주정, 탁주, 약주는과세제외).

2. 주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부과액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3,648	3,768	3,830	3,767	-	-	103.3	103.3
1966	7,061	6,408	6,449	6,342	-	66	90.8	89.8
1967	8,068	8,119	8,236	8,105	-	14	100.6	100.5
1968	11,645	11,513	11,558	11,147	1	366	98.9	95.7
1969	16,369	16,038	16,262	15,967	2	68	98.0	97.5
1970	22,376	21,621	21,745	21,590	1	31	96.6	96.5
1971	31,355	27,605	24,419	27,536	-	70	88.0	87.8
1972	27,418	28,275	30,139	28,115	1	159	103.1	102.5
1973	31,558	34,695	38,266	34,039	-	656	109.9	107.9
1974	50,751	61,598	60,600	53,245	-	8,353	121.4	104.9
1975	88,600	83,551	83,874	81,422	4	2,125	94.3	91.9
1976	87,390	93,376	93,387	93,020	-	356	106.8	106.4
1977	128,778	123,258	123,261	123,249	-	9	95.7	95.7
1978	166,252	194,085	194,407	193,989	1	95	116.7	116.7
1979	245,720	278,143	278,584	265,848	-	12,295	113.2	108.2
1980	317,991	321,930	321,799	297,717	-	24,213	101.2	93.6
1981	387,313	375,089	375,262	374,761	2	326	96.8	96.8
1982	416,322	394,768	395,094	394,708	1	59	94.8	94.8
1983	488,346	441,431	440,808	441,027	-	404	90.4	90.3
1984	490,437	494,539	494,620	493,393	130	1,016	100.8	100.6
1985	537,109	501,986	516,051	501,187	586	213	93.5	93.3
1986	598,677	556,225	551,916	555,805	8	412	92.9	92.8
1987	638,237	581,603	618,663	581,501	-	102	91.1	91.1
1988	649,306	780,513	738,356	780,470	-	43	120.2	120.2
1989	838,691	893,821	900,672	893,033	-	788	106.6	106.5
1990	902,961	1,022,606	1,021,684	1,022,417	-	189	113.3	113.2
1991	1,058,092	1,145,947	1,166,260	1,145,342	8	597	108.3	108.2
1992	1,331,015	1,329,337	1,298,160	1,329,041	-	296	99.9	99.9
1993	1,550,042	1,367,788	1,372,332	1,367,588	-	200	88.2	88.2
1994	1,552,200	1,547,828	1,640,546	1,545,787	-	2,041	99.7	99.6
1995	1,722,900	1,828,568	1,840,362	1,824,513	1	4,072	106.1	105.9
1996	2,291,900	2,084,185	1,974,128	2,083,863	10	312	90.9	90.9
1997	2,054,400	1,795,907	1,965,163	1,789,791	204	5,912	87.4	87.1
1998	1,942,500	1,815,618	1,835,527	1,814,408	83	1,127	93.5	93.4
1999	1,778,338	2,078,662	2,004,704	2,077,975	452	235	116.9	116.8

주: 부과액은수입분을포함한것임.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주류별 주세 부과

(단위: 백만원)

	계	탁주	약주	맥주	청주	과실주	명약주	기타양조주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고량주	위스키
1965	3,830	526	146	1,454	540	1	-	1	171	259	9	-
1966	6,449	793	224	2,453	793	1	-	3	180	498	25	-
1967	8,236	926	201	3,254	1,065	5	-	1	68	728	32	-
1968	11,558	1,068	171	4,523	1,548	28	-	2	40	1,415	28	-
1969	16,262	1,434	193	6,830	2,297	62	-	-	36	1,997	57	-
1970	21,745	1,785	252	10,398	2,759	61	-	-	42	2,649	131	-
1971	24,419	2,082	274	11,791	3,164	74	-	-	60	3,075	145	-
1972	30,139	2,858	259	14,237	3,145	67	-	-	48	4,838	213	-
1973	38,266	3,234	318	18,801	3,983	68	90	-	40	6,195	248	-
1974	60,600	4,259	556	30,380	5,792	81	287	-	128	12,420	596	-
1975	83,874	5,289	598	43,004	6,656	201	439	13	19	18,823	1,073	-
1976	93,387	5,819	527	47,537	7,485	284	670	11	-	21,039	1,527	-
1977	123,261	6,000	469	64,904	9,607	575	940	16	-	25,815	2,220	1,327
1978	194,407	8,742	784	121,220	11,374	825	1,384	10	-	25,484	3,308	5,483
1979	278,584	9,771	470	179,094	13,492	1,089	2,572	-	-	34,589	3,748	11,192
1980	321,799	10,266	336	201,993	14,338	885	2,432	-	-	47,659	4,071	13,945
1981	375,262	13,095	353	228,021	15,051	969	2,661	-	-	63,460	3,464	21,137
1982	395,094	13,202	364	253,512	13,421	1,239	2,384	-	-	66,295	2,041	19,125
1983	440,809	10,449	338	289,034	14,325	1,516	2,315	-	-	69,347	2,443	25,636
1984	494,620	10,052	328	317,126	15,986	1,729	2,583	-	-	80,195	2,413	32,147
1985	516,051	10,828	328	334,240	16,186	2,290	2,825	-	-	80,613	1,935	33,519
1986	551,916	11,618	328	347,854	17,813	2,947	2,725	-	-	90,746	2,337	36,633
1987	618,663	11,583	315	391,100	20,433	3,967	3,281	-	-	95,726	2,970	46,075
1988	738,356	11,387	349	475,258	22,089	4,564	3,956	-	-	103,289	3,539	56,255
1989	900,672	11,438	314	581,241	26,823	4,881	4,689	-	-	111,243	4,687	69,978
1990	1,021,684	12,800	298	655,192	36,185	4,654	5,155	3	51	123,746	5,269	67,978
1991	1,166,260	9,783	357	799,175	37,281	4,776	1,956	4	538	128,135	2,625	68,432
1992	1,298,160	6,851	594	910,614	40,703	5,911	-	-	1,140	149,853	-	63,595
1993	1,372,332	6,537	789	948,039	43,637	4,976	-	-	2,873	170,849	-	78,153
1994	1,640,546	6,800	1,050	1,149,936	44,933	4,145	-	-	2,994	193,309	-	89,360
1995	1,840,362	6,114	1,253	1,283,729	45,272	3,941	-	-	2,041	192,202	-	102,663
1996	1,974,128	6,150	1,246	1,363,090	51,866	3,786	-	-	3,118	218,917	-	151,094
1997	1,965,163	6,002	1,766	1,302,136	54,754	6,480	-	-	2,565	239,499	-	148,803
1998	1,835,527	7,046	4,832	1,195,703	53,057	4,285	-	-	1,778	284,429	-	145,929
1999	1,910,108	6,572	14,549	1,248,169	53,121	5,231	-	-	1,577	329,294	-	205,626

3. 주류별 주세 부과(계속)

(단위: 백만원)

	주정	기타증류주	브랜디	합성청주	합성맥주	인삼주	기타재제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수입분	수시분
1965	628	1	-	30	24	-	41	-	-	-	-	-
1966	1,140	1	-	74	31	-	77	-	-	-	-	155
1967	1,721	1	-	69	-	-	156	-	-	-	6	4
1968	2,086	14	-	83	-	-	352	-	-	-	78	122
1969	2,596	13	-	68	-	-	505	-	-	-	162	12
1970	2,945	11	-	45	-	-	506	-	-	-	152	10
1971	3,049	25	-	39	-	-	505	-	-	-	120	16
1972	3,241	27	-	56	-	-	561	-	-	-	505	86
1973	3,348	39	-	70	-	-	785	-	-	-	990	56
1974	4,193	-	-	84	-	-	855	-	-	-	558	411
1975	5,668	-	18	19	-	177	1,161	-	-	-	674	42
1976	5,882	-	49	-	-	289	1,743	-	-	-	502	22
1977	6,439	-	140	-	-	292	3,313	-	-	-	1,113	90
1978	6,548	-	404	-	-	333	4,111	-	-	-	4,065	332
1979	6,154	-	848	-	-	444	8,574	-	-	-	6,531	15
1980	6,578	-	901	-	-	460	6,680	-	-	-	11,085	170
1981	7,251	-	532	-	-	383	9,597	-	-	-	9,125	162
1982	7,070	-	272	-	-	402	8,418	-	-	-	7,267	83
1983	4,417	-	193	-	-	495	8,360	-	-	-	12,428	-488
1984	6,311	-	200	-	-	449	9,730	-	-	-	15,319	51
1985	6,565	-	230	-	-	440	10,455	-	-	-	15,900	-304
1986	7,316	-	341	-	-	499	10,690	-	-	-	20,323	-252
1987	7,108	-	514	-	-	483	13,809	-	-	-	21,170	128
1988	7,090	-	675	-	-	517	16,048	-	-	-	32,824	516
1989	6,895	-	1,057	-	-	601	21,058	-	-	-	55,323	444
1990	7,196	-	877	-	-	686	27,674	-	-	-	73,838	82
1991	7,622	-	716	-	-	283	15,449	9,260	2,672	220	77,075	-99
1992	8,811	-	770	-	-	-	-	19,721	8,647	1,133	79,664	153
1993	8,605	-	733	-	-	-	-	9,170	13,275	764	83,926	6
1994	7,837	-	634	-	-	-	-	9,635	15,531	186	114,117	79
1995	7,364	-	90	-	-	-	-	6,844	20,562	168	168,026	93
1996	12,260	-	428	-	-	-	-	3,604	27,304	206	130,851	208
1997	14,459	-	448	-	-	-	-	1,783	27,037	217	159,214	-
1998	14,715	-	171	-	-	-	-	1,173	26,619	213	95,577	-
1999	8,177	-	349	-	-	-	-	1,109	35,540	276	-	51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주요 주류 출고 현황

(단위: kl)

	계	탁·약주	희석식소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	청주	주정	기타주류
1983	2,352,976	862,351	583,870	692,452	3,761	3,189	17,897	163,900	25,556
1984	2,426,969	830,479	622,979	737,635	3,944	3,867	19,966	178,010	30,089
1985	2,453,037	874,633	586,949	772,256	4,972	4,033	18,787	164,698	26,709
1986	2,529,917	883,788	629,752	783,128	5,938	4,557	20,190	176,630	25,934
1987	2,627,975	855,894	662,993	851,198	7,897	5,372	23,001	188,681	32,939
1988	2,780,824	774,308	705,948	1,023,008	8,922	6,762	24,334	202,181	35,361
1989	2,901,951	712,137	709,321	1,194,617	9,121	8,221	27,345	201,381	39,808
1990	2,873,219	564,064	701,566	1,307,672	8,943	8,559	34,859	203,818	43,738
1991	2,987,280	442,362	677,862	1,583,928	9,343	9,853	40,400	194,051	29,481
1992	2,972,138	379,367	723,198	1,574,465	12,667	11,158	50,934	204,106	16,243
1993	2,866,107	322,201	743,964	1,508,854	10,222	11,595	48,478	208,986	11,807
1994	3,144,684	302,880	765,180	1,769,057	8,949	15,205	50,095	221,159	12,159
1995	3,163,576	249,288	761,839	1,850,334	7,930	16,488	43,302	221,293	13,102
1996	3,205,543	214,775	787,195	1,868,429	6,590	13,768	42,564	252,838	19,384
1997	3,134,049	190,475	813,583	1,799,202	8,303	10,974	40,160	253,646	17,706
1998	2,922,489	190,829	869,547	1,536,616	5,579	8,063	33,494	259,537	18,524
1999	3,041,651	182,508	944,415	1,578,663	6,429	10,407	31,604	266,311	21,31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주류 제조면허장 수

(단위: 개)

	합계	소계	탁주	약주	맥주	청주	과실주	명약주	기타양조주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고량주
1965	3,545	3,545	2,566	314	2	29	19	-	1	210	319	8
1966	3,494	3,494	2,568	317	2	26	19	-	1	152	308	8
1967	3,401	3,401	2,584	307	2	23	17	-	-	100	283	7
1968	3,346	3,346	2,582	299	2	23	21	-	-	68	269	4
1969	3,362	3,310	2,559	301	2	23	22	-	-	60	261	4
1970	3,211	3,159	2,442	275	2	22	22	-	-	31	254	4
1971	2,826	2,773	2,327	232	4	21	22	-	-	9	75	4
1972	2,504	2,453	2,058	203	4	20	20	-	-	7	68	4
1973	2,217	2,180	1,878	179	5	11	14	1	-	4	26	8
1974	1,694	1,661	1,521	45	5	10	10	1	1	4	16	7
1975	1,658	1,627	1,498	43	5	10	8	1	-	-	16	8
1976	1,645	1,615	1,490	42	4	9	9	1	-	-	15	6
1977	1,606	1,575	1,474	33	4	4	7	1	1	-	12	3
1978	1,605	1,577	1,475	34	4	4	7	1	-	-	12	3
1979	1,602	1,576	1,466	33	5	4	10	1	-	-	12	3
1980	1,590	1,564	1,461	30	5	4	10	1	-	-	11	3
1981	1,570	1,544	1,447	30	5	3	7	1	-	-	10	2
1982	1,560	1,532	1,437	29	5	3	8	1	-	-	10	2
1983	1,556	1,531	1,436	29	5	3	8	1	-	-	12	2
1984	1,541	1,518	1,427	29	4	3	8	1	-	-	11	2
1985	1,527	1,504	1,412	30	4	3	8	1	-	-	11	2
1986	1,526	1,502	1,405	30	6	3	9	1	-	-	11	2
1987	1,508	1,485	1,390	29	5	3	10	1	-	-	10	2
1988	1,495	1,473	1,379	28	6	3	9	1	-	-	10	2
1989	1,480	1,458	1,363	28	7	3	9	1	-	-	10	2
1990	1,455	1,433	1,321	30	7	3	9	9	4	2	10	2
1991	1,417	1,414	1,283	44	4	9	11	-	-	3	12	-
1992	1,382	1,379	1,238	44	4	9	10	-	-	8	13	-
1993	1,365	1,362	1,204	50	9	4	15	-	-	8	13	-
1994	1,361	1,358	1,174	66	9	4	16	-	-	8	13	-
1995	1,357	1,354	1,136	74	9	4	20	-	-	10	14	-
1996	1,337	1,333	1,108	72	9	4	17	-	-	10	15	-
1997	1,297	1,294	1,056	74	8	4	20	-	-	9	16	-
1998	1,277	1,275	1,028	80	8	4	21	-	-	11	17	-
1999	1,286	1,284	1,014	88	8	4	21	-	-	14	17	-

5. 주류 제조면허장 수(계속)

(단위: 개)

	주정	위스키	기타증류주	브랜디	합성청주	합성맥주	인삼주	기타재제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1965	15	-	4	-	18	1	-	39	-	-	-
1966	24	-	3	-	21	-	-	45	-	-	-
1967	24	-	2	-	16	-	-	36	-	-	-
1968	24	-	2	-	14	12	-	26	-	-	-
1969	23	-	2	-	13	-	-	40	-	-	-
1970	52	-	4	-	9	-	-	42	-	-	-
1971	25	-	5	-	5	-	-	44	-	-	-
1972	20	-	6	1	4	-	-	38	-	-	-
1973	19	-	-	1	4	-	-	30	-	-	-
1974	15	-	-	1	2	-	2	21	-	-	-
1975	15	-	1	1	-	-	2	19	-	-	-
1976	15	3	-	1	-	-	2	18	-	-	-
1977	15	5	-	1	-	-	2	13	-	-	-
1978	16	5	-	1	-	-	2	13	-	-	-
1979	20	5	-	1	-	-	2	14	-	-	-
1980	17	5	-	1	-	-	2	14	-	-	-
1981	16	4	-	1	-	-	2	16	-	-	-
1982	15	4	-	1	-	-	2	15	-	-	-
1983	15	3	-	1	-	-	2	14	-	-	-
1984	13	3	-	1	-	-	2	14	-	-	-
1985	13	3	-	1	-	-	2	14	-	-	-
1986	13	3	-	1	-	-	2	16	-	-	-
1987	13	3	-	1	-	-	2	16	-	-	-
1988	13	3	-	1	-	-	2	16	-	-	-
1989	13	3	-	1	-	-	2	16	-	-	-
1990	13	3	-	1	-	-	2	17	-	-	-
1991	14	3	-	1	-	-	-	-	15	12	3
1992	13	5	-	2	-	-	-	-	16	13	4
1993	15	5	-	2	-	-	-	-	17	15	5
1994	14	4	-	3	-	-	-	-	20	23	4
1995	14	4	-	3	-	-	-	-	23	40	3
1996	12	5	-	3	-	-	-	-	24	52	2
1997	12	5	-	3	-	-	-	-	25	59	3
1998	12	5	-	4	-	-	-	-	23	58	4
1999	12	6	-	3	-	-	-	-	26	67	4

5. 주류 제조면허장 수(계속)

(단위: 개)

	발효제소계	효모	주모	주요	곡자	입국	조효소제	정제효소	종국	술덧
1965	-	-	-	-	-	-	-	-	-	-
1966	-	-	-	-	-	-	-	-	-	-
1967	-	-	-	-	-	-	-	-	-	-
1968	50	-	-	-	39	2	-	-	9	-
1969	52	-	-	1	39	2	-	-	10	-
1970	52	-	-	-	39	3	-	-	10	-
1971	53	-	-	1	38	4	-	-	10	-
1972	51	-	-	-	34	-	7	-	10	-
1973	37	-	-	-	17	-	7	2	11	-
1974	33	-	-	-	14	-	6	2	11	-
1975	31	-	-	-	13	-	5	2	11	-
1976	30	-	-	-	13	-	4	2	11	-
1977	31	2	-	-	12	-	4	2	11	-
1978	28	2	-	-	10	-	3	2	11	-
1979	26	2	-	-	10	-	2	2	10	-
1980	26	2	-	-	10	-	2	2	10	-
1981	26	2	-	-	10	-	2	2	10	-
1982	28	2	-	3	10	-	2	2	9	-
1983	25	2	-	2	8	-	2	1	10	-
1984	23	2	-	2	6	-	2	1	10	-
1985	23	2	-	2	6	-	2	1	10	-
1986	24	2	-	2	6	-	2	2	10	-
1987	23	2	-	2	5	-	2	2	10	-
1988	22	2	-	2	5	-	2	2	9	-
1989	22	2	-	2	5	-	2	2	9	-
1990	22	2	-	2	5	-	2	2	9	-
1991	3	-	1	2	-	-	-	-	-	-
1992	3	-	1	2	-	-	-	-	-	-
1993	3	-	-	-	-	-	-	-	-	3
1994	3	-	-	-	-	-	-	-	-	3
1995	3	-	-	-	-	-	-	-	-	3
1996	4	-	-	-	-	-	-	-	-	4
1997	3	-	-	-	-	-	-	-	-	3
1998	2	-	-	-	-	-	-	-	-	2
1999	2	-	-	-	-	-	-	-	-	2

주: 1. 각연도 12월 31일현재기준임.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각연도.

6. 주류 판매면허장 수

(단위: 개)

	합계	도매업 면허 소계	종합주류	일반주류	국산 양주류	수퍼연쇄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	탁·약주	주정	민속주	소매업면허 (종별 포함)	수출입업 면허 소계	수출업자	수입업자	수출입 중개	직매장	하치장
1985	409,824	1,498	-	606	305	258	6	322	1	-	407,997	35	-	1	34	268	26
1986	406,919	1,462	-	604	305	231	1	320	1	-	405,122	36	-	1	35	272	27
1987	424,661	1,272	-	604	138	207	1	321	1	-	423,049	40	-	12	28	275	25
1988	436,895	1,269	-	603	136	206	5	318	1	-	435,242	57	-	12	45	294	33
1989	453,321	1,261	-	604	136	201	21	298	1	-	451,739	76	-	25	51	203	42
1990	472,272	1,527	941	-	-	210	62	313	1	-	470,308	108	-	49	59	290	39
1991	484,508	1,584	974	-	-	218	79	312	1	-	482,450	160	-	67	93	276	38
1992	509,750	1,635	996	-	-	224	104	310	1	-	507,617	196	-	84	112	257	45
1993	525,570	1,693	1,035	-	-	222	130	305	1	-	523,351	204	-	98	106	277	45
1994	542,214	1,911	1,136	-	-	223	156	343	1	52	539,678	273	-	120	153	294	58
1995	574,047	2,030	1,186	-	-	236	165	379	1	63	571,371	304	28	133	171	282	60
1996	2,792	2,114	1,205	-	-	248	159	447	1	54	-	320	38	131	151	306	52
1997	2,855	2,132	1,199	-	-	264	177	441	1	50	-	365	81	151	133	313	45
1998	2,831	2,154	1,185	-	-	248	166	509	1	45	-	313	92	110	111	316	48
1999	3,165	2,407	1,167	-	-	-	164	-	1	-	-	377	139	238	-	326	55

주: 1. 각 연도 12월 31일 현재가 준임.
2. 1996년분부터는 소매업면허(종별 포함)가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합계에서도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7. 주세 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65	-	-	-	-	-	-	-	-	-
1966	3	-	3	3	-	2	1	1,273	-
1967	6	-	6	6	-	6	-	-	-
1968	9	-	9	8	2	6	-	-	1
1969	5	1	4	5	-	5	-	-	-
1970	12	-	12	12	3	8	1	3,889	-
1971	13	-	13	13	6	3	4	172	-
1972	26	-	26	23	1	21	1	14	3
1973	17	3	14	17	1	11	5	1,254	-
1974	41	-	41	40	5	24	11	2,442	1
1975	3	1	2	3	2	1	-	-	-
1976	-	-	-	-	-	-	-	-	-
1977	1	-	1	1	-	1	-	-	-
1978	3	-	3	3	1	2	-	-	-
1979	1	-	1	1	-	1	-	-	-
1980	4	-	4	4	-	4	-	-	-
1981	-	-	-	-	-	-	-	-	-
1982	3	-	3	3	-	2	1	29,197	-
1983	-	-	-	-	-	-	-	-	-
1984	1	-	1	1	-	1	-	-	-
1985	1	-	1	1	-	1	-	-	-
1986	7	-	7	7	-	7	-	-	-
1987	1	-	1	1	-	1	-	-	-
1988	-	-	-	-	-	-	-	-	-
1989	-	-	-	-	-	-	-	-	-
1990	-	-	-	-	-	-	-	-	-
1991	-	-	-	-	-	-	-	-	-
1992	-	-	-	-	-	-	-	-	-
1993	-	-	-	-	-	-	-	-	-
1994	1	-	1	1	-	1	-	-	-
1995	2	-	2	2	-	2	-	-	-
1996	2	-	2	2	-	1	1	-	-
1997	1	-	1	1	-	1	-	-	-
1998	1	-	1	-	-	-	-	-	1
1999	3	1	2	3	1	2	-	-	-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연도.